박 사 학 위 논 문

분배정의 선호와 분배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불공정성 인식을 매개효과로-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천 민 경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성우

분배정의 선호와 분배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불공정성 인식을 매개효과로-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Evaluation of Distributive System in Korea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unfairness as an intermediate effect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천 민 경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성우

분배정의 선호와 분배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불공정성 인식을 매개효과로-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Evaluation of Distributive System in Korea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unfairness as an intermediate effect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천 민 경

천민경의 정책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분배정의 선호와 분배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불공정성 인식을 매개효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천 민 경

본 연구는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분배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분배원칙의 선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배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배원칙은 평등원칙과 형평원칙으로 구분하였으며 분배정책은 사회보장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의료보험정책, 국민연금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두 가지 분배원칙은 다양한 정치철학적 분배정의론을 고찰하면서 각각의 정의론에서 추구하는 분배정의 기준들이 현 복지국가의 적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도출하였다.

자유주의적 분배정의론에서 우선 자유지상주의는 원칙적으로 분배정책을 반대하고 형평원칙을 강조하였으며, 공리주의는 평등원칙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은 최대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복지국가의 분배의 평등원칙과는 차이를 보인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롤즈의 정의론에서 제 1원칙의 자유우선성과 제 2원칙의 정당한 불평등을 통해 형평과 평등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분배원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분배원칙, 즉 복합적인 평등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배정의 원칙 중 평등원칙의 선호와 형평원칙 선호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불공정성 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배제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분배제도에서 형평원칙의 선호도는 조세정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보장정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평등원칙의 선호도는 의료보험제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정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공무원 집단이 형평원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정치인 집단은 평등원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불공정성 인식의 경우 전반적으로 현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으로 얻어진 부와 소득의 공정배분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집단별로는 공무원 집단이 불공정성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인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배제도의 공정성 평가에서는 평등원칙이 선호되었던 의료보험제도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형평원칙이 선호되었던 조세정책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집단별로는 불공정성 인식과 같이 공무원집단이 분배제도의 공정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일반인 집단은 높게 평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주목할 것은 일반인과 정치인 보다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이 불공정성 인식이 높았고 그에 따른 제도의 공정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성 인식의 분배원칙 선호와 분배제도 공정성평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형평원칙 선호는 불공정성 인식 중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균등에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평등원칙 선호에서는 기회균등 부문만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형평원칙 선호에서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부문에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반인의 경우 형평원칙과 평등원칙 모두에서 부와 소득분배공정성 부문에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배제도에 따라 상이한 분배원칙 선호가 존재하며, 또한 집단별 응답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불공정성 인식에 대한 매개효과가 확연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불공정성의 인식에 대한 논의, 즉 복지의식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하지 않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분배정의 원칙 중 평등원칙이 시장경제적 분배의 수정을 가능케 하는 원칙으로 볼 때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층에 속한 구성원들이 평등원칙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분배원칙의 선호가 다양한 분배제도를 수정하기까지는 의식 및 기반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분배정의의 선호, 분배제도의 평가, 분배원칙, 불공정성 인식, 불공정성 수용정도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목적 ····· 3
제 3 절 연구방법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제 1 절 정치철학적 분배정의론 ····· 6
1) 자유주의적 정의론 ····· 6
가) 자유지상주의 ····· 6
나) 공리주의 ····· 11
2)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 12
3) 공동체주의 ····· 14
4) 맑스주의 ····· 16
제 2 절 분배정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 18
제 3 절 분배정의 원칙의 개념 및 분배제도 ····· 23
1) 분배정의 원칙의 개념 ····· 26
가) 평등의 원칙 ····· 26
나) 형평의 원칙 ····· 28
2) 분배제도 ····· 30
가) 사회보장제도 ····· 31
나) 조세정책 ····· 31
다) 의료보험제도 ····· 31

라) 주택정책 ····· 32
마) 국민연금제도 ····· 32

제 3 장 연구설계 ····· 33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 33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8

제 4 장 연구결과 ····· 39

제 1 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 39
제 2 절 분배원칙 선호도 비교 ····· 43
제 3 절 집단 간 평균값 비교 ····· 51
제 4 절 다중회기분석 결과 ····· 67
제 5 절 요인 간 경로분석 ····· 105

제 5 장 결 론 ····· 129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 129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 132

참고문헌 ····· 134
부 록 ····· 140

ABSTRACT ····· 147

표 목 차

〈표 1〉 정치철학적 분배정의론 분류 ····· 17
〈표 2〉 분배정의 관련 실증적 연구 ····· 22
〈표 3〉 학자들의 분배기준 분류 ····· 27
〈표 4〉 형평성과 관련된 쟁점들 ····· 28
〈표 5〉 Muller의 공정성 인식 조사 문항 ····· 34
〈표 6〉 분배원칙 선호와 분배제도 평가 연구 설문 문항 구성 ····· 37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 40
〈표 8〉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세금인상 방식 ····· 42
〈표 9〉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도(조사대상자 별) ····· 43
〈표 10〉 분배정의 기준 중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도(소득별) ····· 44
〈표 11〉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도(조사대상자 별) ····· 44
〈표 12〉 분배정의 기준 중 평등원칙에 대한 인식도(소득별) ····· 45
〈표 13〉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대상자 별) ····· 46
〈표 14〉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소득별) ····· 47
〈표 15〉 제도의 공정성 평가 (조사대상자별) ····· 47
〈표 16〉 제도의 공정성 평가 (소득별) ····· 48
〈표 17〉 평등분배에 관한 인식(조사대상자 별) ····· 49
〈표 18〉 평등분배에 관한 인식(소득별) ····· 50
〈표 19〉 성별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 51
〈표 20〉 성별에 따른 분배원칙기준 선호와 제도공정성 평가 ····· 52
〈표 21〉 학력에 따른 불공정에 대한 인식 ····· 53
〈표 22〉 학력에 따른 분배원칙 선호와 제도공정성 평가 ····· 54
〈표 23〉 거주지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 56
〈표 24〉 거주지에 따른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도 ····· 57
〈표 25〉 거주지에 따른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도 ····· 58

〈표 26〉 거주지에 따른 분배제도 공정성평가 ····· 59
〈표 27〉 연령에 따른 불공정에 대한 인식 ····· 61
〈표 28〉 연령에 따른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도 ····· 63
〈표 29〉 연령에 따른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도 ····· 64
〈표 30〉 연령에 따른 제도공정성 평가 ····· 65
〈표 31〉 요인분석 결과 ····· 68
〈표 32〉 매개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전체) ····· 71
〈표 33〉 매개변수 회귀모형 요약(전체) ····· 72
〈표 34〉 매개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공무원) ····· 76
〈표 35〉 매개변수 회귀모형 요약(공무원) ····· 78
〈표 36〉 매개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일반인) ····· 81
〈표 37〉 매개변수 회귀모형 요약(일반인) ····· 83
〈표 38〉 매개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정치인) ····· 87
〈표 39〉 매개변수 회귀모형 요약(정치인) ····· 88
〈표 40〉 매개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합 ····· 92
〈표 41〉 제도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전체) ····· 93
〈표 42〉 제도평가의 회귀모형 요약(전체) ····· 94
〈표 43〉 제도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공무원) ····· 96
〈표 44〉 제도평가의 회귀모형 요약(공무원) ····· 97
〈표 45〉 제도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일반인) ····· 99
〈표 46〉 제도평가의 회귀모형 요약(일반인) ····· 100
〈표 47〉 제도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정치인) ····· 102
〈표 48〉 제도평가의 회귀모형 요약(정치인) ····· 103
〈표 49〉 매개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합 ····· 104
〈표 50〉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전체) ····· 108
〈표 51〉 최종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전체) ····· 110
〈표 52〉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공무원) ····· 114
〈표 53〉 최종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공무원) ····· 115
〈표 54〉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일반인) ····· 119

〈표 55〉 최종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일반인) ····· 121
〈표 56〉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정치인) ····· 125
〈표 57〉 최종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정치인) ····· 126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33
〈그림 2〉 가설적 인과모형 ····· 105
〈그림 3〉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전체) ····· 112
〈그림 4〉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공무원) ····· 117
〈그림 5〉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일반인) ····· 123
〈그림 6〉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정치인) ····· 12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분배정의’는 공공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핵심이다. 정치학의 가장 유명한 정의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지(who gets what, when, and how)"에 대한 연구라고 말해진다. 논의의 쟁점이 상품과 서비스, 부와 수입, 건강과 질병 혹은 기회와 불리한 조건이든지 간에 분배적 정의는 공공정책의 핵심적 기준이며 주제이다. 이것은 평등,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존재하며, 특정 집단에게는 공정하다고 이해되는 정책이 다른 집단에게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비판받기 때문이다. 이렇듯 분배갈등은 분배정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관념을 둘러싸고 일어난다(이성우, 2013: 221-222).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의 기본인식을 전제로 한다. 우선 첫째로, ‘분배정의’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전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바람직한 분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정의된 원칙보다 개개인 나름대로의 느낌이나 의견이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곧, 공정하다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형평, 욕구, 노력 등의 원칙까지도 규정되어야만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복지정책 등 분배제도들은 시대나 공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위의 물음인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지’의 대안은 국가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최상위 목표는 분배정의의 구현에 있으며, 정책의 다양한 모형은 분배정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관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듯 분배정의는 사회복지정책 등 분배제도의 발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이 된다. 즉 모든 정책은 궁극적으로

분배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불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분배정의의 개념은 '각자에게 응분의 몫을 분배한다'라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는데(Miller, 1976), 이러한 개념 규정에는 응분의 몫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분배정의는 바로 이 응분의 몫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형평 또는 욕구에 비례하여 응분의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평등하다는 사실에 의해 응분의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듯 분배정의 개념은 응분의 몫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를 의미하는 분배원칙이 다양하게 개념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호도 분배정의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된다.

복지국가의 여러 분배제도들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재분배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의 최상위 가치인 분배정의의 개념이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분배원칙에 대한 선호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 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등 분배제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선택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Gilbert, 1993).

그러므로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 조세정책 등 분배제도에 관한 논의와 함께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분배정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분배정의의 연구는 대부분 이론연구로, 정치철학적 부분의 연구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학적 연구와 경제학적 연구가 각각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분배정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10편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분배정의 원칙과 선호를 탐색하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배정의에 근거한 분배제도 개선의 모색은 더욱 희박하였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의 분배정의관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 사회가 원하는 정의로운 분배상태는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며,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과 제도공정성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분배원칙들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배제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경험적으

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불공정성의 인식이 분배제도의 공정성 평가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지금까지 분배원칙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배제도가 분배정의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사실의 파악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구성원들의 선택의 결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등 분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우선 분배원칙이 다양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분배원칙은 형평원칙과 평등원칙을 말한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의 분배원칙들은 “재분배원칙”이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일차분배의 수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정당성은 바로 이 재분배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재분배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말한 복지국가의 분배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분배정의와 분배제도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적 연구에 치중이 되어 있으므로 정작 사회구성원들의 분배정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책대상의 분배정의의 평등 및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가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분배제도의 공정성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분배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견해를 고찰하고, 둘째, 이론들로부터 도출된 분배원칙이 현 사회복지정책 등 분배제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셋째로 일반인과 공무원, 정치인이 선호하는 분배정의관은 어떤 것이며, 이러한 분배정관에 따라 현 분배제도에 대한 공정성평가를 알아보고, 넷째, 우리사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이 분배정의관과 제도의 공정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 등 분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책의 기본

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가‘이며 그 선택된 대안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당화의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왜?”에 대한 답변이 분배정의의 구현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분배정의의 모형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첫째, 분배정의론에 관한 정치철학적 이론을 고찰하면서 그로부터 각 정의론에 연관된 분배원칙을 도출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둘째로는 분배정의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관련 정책과 관련한 사회보장정책, 의료보험제도, 주택정책, 국민연금제도, 조세제도를 간략히 살펴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문헌연구 부분에서 다루게 될 정치철학적 분배정의를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분배원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되고, 이를 독립변수로 삼아 사회구성원들의 분배정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정책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그와 관련된 분배정의 인식조사 방법으로 실험실적 연구방법은 실제적인 함의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정치 않다고 판단하여 외부 요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기에는 분배 원칙으로 형평원칙과 평등원칙, 욕구원칙으로 구성하였으나, 사전조사에서 욕구원칙과 평등원칙 선호의 요소가 분리되지 않았다. 이는 욕구원칙은 대개 분배 몫을 받을 사람의 부정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것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건이나 기회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곧 부정적인 특성을 의미하고 미치지 못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삶의 주기에 따라 욕구원칙에 따른 분배가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욕구원칙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

회구성원들의 삶의 주기에 따라 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욕구원칙과 평등원칙의 차이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정확히 인식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욕구원칙은 제외하고 형평원칙과 평등원칙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그리고 사회의 불공정성인식을 매개효과로 설정하여 제도공정성 평가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를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그 중 일반인은 435명(50.2%), 공무원 350명(40.4%), 정치인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하여 80명(9.4%)으로 총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분배정의 원칙에 대한 선호와 분배제도의 공정성평가, 그리고 불공정인식의 매개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치철학적 분배정의론

우리가 현 사회에서 어떠한 분배가 공정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기 위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어떠한 분배상태가 공정하다”라는 분배상태에 관한 기본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배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사유의 출발은 분배를 왜 해야 하는지, 과연 어떤 분배상태가 공정한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철학적 분배정의론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논의되었는데 분배정의에 관하여 최초로 부각시킨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분배적 정의는 “명예나 돈, 기타 공민사이에 분담되는 가치의 분배에 관한 원칙”이며, 이익의 비례적 균등, 즉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이성우, 1983: 60-61).

본 논문에서는 분배정의 이론을 노직과 하이에크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공리주의(utilitarianism),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 센델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그리고 맑스주의(Marxism)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유주의적 정의론

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1) 노직의 소유권리론

노직의 정의론(Nozick, 1974)은 흔히 소유권리론(the entitlement theory)으로 불리는데, 그의 이 이론은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이어야 한다는 칸트적인 원칙으로 시작한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고,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희생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는 분배정의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① 소유물(holdings)에 대한 권리(소유권리)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면 그는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리를 갖게 되고, ② 소유물에 대하여 정의의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정당하게 이전(transfer)하였다면 그것을 이전받은 사람도 그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리를 갖게 되며, ③ 만일 위의 두 과정에서 불의(injustice)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정은 그가 말하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the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이며, 두 번째 과정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the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이고, 세 번째 과정은 교정의 원리(the principle of rectification of injustice)이다. 교정의 원리는 불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났을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앞의 두 원리에 대한 침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Nozick, 1974: 150-153).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상식적인 소유관념에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결국 사람들이 정당하게 소유한 것을 자유롭고 정당하게 교환하였다면 그 결과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의로운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직의 이론에서는 위 세 과정의 교환을 거쳐 나타난 분배결과를 두고서 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한 재분배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노직에게는 분배과정을 거쳐 나타난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최초 취득과 이전에 있어서 절차상의 정의가 확보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복지정책도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교환에 의해 이루어질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자원을 징수하고 분배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노직이 절차상의 정의만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곧 그가 자유로운 교환(이전)을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직은 취득에 있어서의 정의원리를 정당화 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특정한 분배원칙을 옹호하게 된다. 노직은 자본주의 사회에 확립되어 있는 사유재산의 최초 취득을 정당화하기 위해 로크(John Locke)의 논리에 의존한다(Nozick, 1974: 174-182).

로크는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등장하던 시기에 과거 공동체의 소유

였던 토지의 사유화를 옹호하기 위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로크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며 (자기소유; self-ownership), 따라서 노동도 개인의 소유이고 개인의 소유인 노동을 토지에 발휘하면 그 토지는 그 개인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로크는 토지의 사유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유화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유보조항(Lockean proviso)을 달았는데, 노직은 로크의 조항을 소유권리의 취득 과정에서 소유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Nozickean proviso)는 식으로 해석하였다(Nozick, 1974: 175-176).

노직은 타인의 상황악화를 물질적 측면에서만 해석하며 물질적인 면에서 타인의 상황이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누가 소유권리를 취득하건 또한 소유권리 취득을 통해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Kymlicka, 1991: 112-114). 예를 들면 갑과 을이 함께 사용하던 땅을 갑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을은 생존을 위해서 갑의 땅에 가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노직은 갑의 소유권리 취득 이후 을이 받는 노동의 대가가 이전에 을이 취하던 대가보다 많은가 적은가만 따지는 것이다. 노동의 대가가 더 많다면 노직은 갑의 소유권리 취득을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 갑의 소유권리 취득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을이 갑의 땅에 가서 노동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Kymlicka, 1990: 111). 킴리카는 또한 상황 악화의 비교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직은 소유권리 취득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물질적 상황 변화를 비교하고 있는데, 만약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갑보다 더 잘 운영하여 전체 수익이 높아졌을 경우 갑이 소유권리를 취득한 것이 을에게는 전혀 나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직에게 소유권리의 취득은 그것을 먼저 시도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없이 소유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어 버린다(Kymlicka, 1991, p.114). 이는 로크의 조항을 노직이 지나치게 해석함으로 기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결국 노직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므로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소유이

고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외부자원을 소유하는 것은 그로 인해 타인의 물질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능력에 따라 혹은 공적에 따라 분배받아야 한다는 형평(equity)의 분배원칙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직은 형평의 분배원칙을 거부한다. 노직은 분배 몫을 받을 개인의 과거 행위를 기준으로 그가 현재의 분배몫에 대해 소유권리를 취득하는가를 판단하는 이론을 역사적 정의론으로 규정하고, 반면에 특정하게 구조화된 분배원칙에 의하여 현재 시점에서 분배상태의 정의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을 종국적정의론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소유권리론은 역사적 정의론에 속한다고 말한다(Nozick, 1974, pp.153-155).

노직의 소유권리론을 구성하는 원리 중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은 최초 소유권리 취득의 원리이지만, 이전의 원리가 갖는 중요성도 매우 크다(Wolff, 1991, p.79). 이전의 원리는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친 소유권리의 이전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의롭다(Nozick, 1974: 151)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일반적인 상식과 상당히 벗어난 논리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많은 국가가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한 장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노직의 원리에 의하면 내가 내 몸을 소유했다면, 내 몸의 일부인 장기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판매를 옹호하는 사람 중 자유지상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노직에게 있어 정의로운 분배는 바로 정당한 소유권리의 취득을 의미하므로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한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물의 최초 획득의 절차와 소유물의 이전 원리를 정당화하는 노직의 논의는 형평개념에 상당히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의 불평등과 이전에 의한 불평등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세대 사람들도 능력의 발휘에 따른 분배라는 동일한 형평의 논리로 그러한 불평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이혜경, 1997: 49). 또한 노직은 그의 저서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에서 형평성의 기준으로서 과정과 절차를 옹호하는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자발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성우, 2013: 223).

(2) 하이에크의 규칙지배주의

하이에크(Hayek 1960)도 노직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결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와 간섭하는 분배를 거부한다. 하이에크가 분배를 거부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자유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다른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하이에크는 자유란 "한 인간이 타인의 의도를 통한 강제나 또는 타인에 예속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Hayek, 1960: 20-21).

하이에크는 이를 시장에 적용하여 시장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교환 행위의 결과는 그것에 대해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시장은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배행위"라는 것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당연히 시장에서의 분배결과는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Hayek, 1976: 31). 만일 시장의 결과에 대해 분배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개입하게 되면 이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분배정의를 원시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공동의 목적을 수행했던 "뿌리깊은 본능"이 오늘날 다시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사회처럼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했던 과거의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서로 조화롭게 행동한다는 "공동의 경기규칙"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규칙이 아닌 결과에 중점을 두는 분배정의 개념을 거부한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시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본의가 아니겠지만 특정한 정의의 기준을 인정하게 된다. 즉 시장은 가장 효율적이며 이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 올 다른 제도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이에크는 분배원칙으로 형평(equity)이라는 기준을 마지못해 인정하게 된다(Plant, 1991: 94). 즉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배는 그 교환과정에서 많이 기여한 자가 많은 것을 배분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형평이라는 기준을 인정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결과는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의도가

없다는 그의 최초의 논지가 손상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시장에서의 결과가 형평원칙에 의해 정의롭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것을 형평원칙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게 된다. 그럼으로 하이에크의 최초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 대한 개입이 논리적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며. 재분배의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나) 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는 가치판단의 기준을 효용(utility)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majority)의 원리로 나타난다.

센(Amartya Sen)은 공리주의를 후생주의(welfarism),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그리고 합산에 의한 판단원칙(sum-ranking)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이혜영, 1997: 44). 공리주의는 행복의 총합을 계산할 경우에 각 사람의 행복을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이러한 결과로 공리주의는 행복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데에 중요성을 둔 입장과 행복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각 사람의 개별적 행복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데에 중요성을 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킴리카는 전자를 목적론적 공리주의, 후자를 평등주의적 공리주의로 명명하였다(Kymlicka, 1990: 30-35).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경우에 평등원칙의 분배를 선호하게 된다(Plant, 1991: 157-159; 이재율, 1995: 102-104 재인용). 이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면 부가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분산되어 있는 것이 총효용의 극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각자의 개별적 행복에 동등한 가중치의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원을 생산하는 데에 투여된 개인들의 공적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공리주의자들은 형평원칙을 옹호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원 생산에 관련한 공적은 곧 총효용의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에 기여한 자들은 총효용의 증가를 위해 보다 많은 비효용(disutility)의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Plant, 1991: 159-160; 이재율, 1995: 105).[1] 그리고 만약 욕구에 관한 가중치의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욕구원칙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리주의는 행복의 총계에 의한 결과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 결과주의의 입장이 강조되는 경우에 공리주의는 그 어떠한 분배원칙이든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태로 분배가 되던 그 결과로서의 행복의 총합이 극대화되면 공리주의는 그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Plant, 1991: 156-162).

공리주의는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분배원칙을 선호할 것이다(이재율, 1995: 107). 결국, 공리주의는 분배상태를 평가하거나 분배원칙을 제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지 최대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측면에서 부차적으로 재분배가 옹호될 수 있을 뿐이다.

2)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quality)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속하는 정의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인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 원리는 사회계약론을 바탕에 두고 있다. 롤즈의 분배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을 하나의 이론체계로 결합시키는 독창성을 볼 수 있다. 롤즈가 의미하는 정의는 아무런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원칙에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가상의 상황에서 누구도 자신이 장래에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모르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이나 체력 등이 어떠한 수준일지 모르는 원초적 상황으로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2] 그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조직 원칙을 합의할 것인가를 구명하는 데 중점을 두어 그러한 사회조직 원칙으로 두 가지 정의 원칙을 제시하였다(Rawls, 1971: 60-61, 302-303).

롤즈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사회는 첫째, 분배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기본적인 자유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며(제 1원칙), 둘째, 사회·경제정의의

1)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시장경제의 불평등을 옹호하는 논리로 기능하게 된다.
2) 롤즈는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인간이 취하게 될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최소극대화 전략(maximin strategy)이라고 주장하였다(Rawls, 1971: 152-154).

기본원리를 담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있지만 그것이 기회균등과 차등원칙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불평등인(제 2원칙) 그러한 사회이다. 제 2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justifiable inequality)의 기준을 위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롤즈의 사회정의 원리는 제2원칙이 제1원칙을 우선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롤즈가 두 가지 정의원칙을 적용하는 분배대상은 이른바 일차재(primary goods)이다. 일차재란 기본적으로 원하게 되는 가치를 말하는데, 롤즈는 일차재로 권리와 자유, 권력과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자존감을 들었다(Rawls, 1971: 62, 92).

결국 롤즈는 권리와 자유가 평등하게 분배된 사회, 기회균등의 조건 하에서 권력이 불평등한 사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소득과 부가 불평등한 사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3]. 만일 기본적인 자유와 기회가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롤즈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판단할 것이며, 위의 제 1과 제2 원칙에 따라 분배를 수정하고자 할 것이다.

롤즈는 두 가지 정의원칙이 요구하는 사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 4단계 계열(four-stage sequence) 제시하고 있는데, 제1단계는 두 가지 정의 원칙이 실행되고, 제2단계에서 정의원칙에 따라 권리와 자유의 정치적 기본헌장(constitution)이 실행되며, 제3단계에서 차등원칙과 효율성이 구현되는 체제가 실행되고, 4단계에서는 정의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Rawls, 1971: 195-201; Kukathas and Pettit, 1990: 48-49).

이 4단계 계열을 거쳐 형성되는 사회는 크게 정의로운 정치체제와 정의로운 사회경제체제로 구성되는데, 정의로운 정치체제는 정의원칙 중 제 1원칙을 구현하는 체계이고, 정의로운 사회경제체제는 제 2원칙을 즉 효율성과 복지를 구현하는 체제이다(Rawls, 1971: 199).

정의로운 경제체제, 즉 배경적 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 정부는 네 가지 부처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할당처, 안정처, 이전처, 그리고 배분처를 말한다.(이

3) 롤즈는 두 가지 정의원칙이 축차적 서열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에 따르면 제 1원칙인 자유의 평등원칙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그 다음이 제 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기회균등, 마지막으로 제 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인 차등원칙이 우선시 된다(Rawls, 1971, p.62).

혜경, 1997: 46 재인용). 할당처(allocation branch)는 가격체계를 경쟁적인 것으로 유지하고 불합리한 독과점의 형성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안정처(stabilization branch)는 일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정 운영이 안정을 위해 완전고용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두 부처는 시장의 효율성 유지 기능을 지닌다. 이전처(transfer branch)는 욕구를 고려하여 사회적 최저수준(social minimum)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4] 분배처(distribution branch)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재산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부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Rawls, 1971: 274-279). 조세의 형태로 롤즈는 소비에 대해 적용되는 비례세를 선호하고 있다. 비례소비세는 소비에 적용됨으로써 사회자원의 형성에 대한 기여부문이 아닌 사회자원의 획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의관에 더 잘 부합된다는 것이다(Rawls, 1971: 278-279). 이는 곧 그가 형평의 분배원리를 암묵적으로 옹호하고,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도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등원칙을 복지국가와 연관시켜 해석한다면 롤즈의 정의론은 국가차원에서 재분배장치의 설치를 요구하는 논리이며 곧 사회복지 제도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차등원칙의 적용은 욕구원칙의 분배정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처(transfer branch)를 통하여 수혜자의 욕구를 고려한 사회적 최저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로서 롤즈는 특정한 분배원칙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제 1원칙을 통하여 평등원칙과 제 2원칙을 통하여 실제로는 형평원칙과 욕구원칙까지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이혜경, 1997: 46 재인용).

3)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요소의 비판에서 시작되었으며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기결정의 능력을 타고난 자아의 개념을 거부

4) 롤즈는 수혜자의 장기적인 기대수준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Rawls, 1971: 285)

한다는 데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아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공동체와 무관하게 자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공동체주의는 권리보다는 책임을, 가치중립적 방임보다는 가치판단적 담론을 중시한다(이종수, 2013: 204).

분배정의에 관련하여서도 공동체주의는 분배대상에 따라 공동체가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분배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배원칙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분배대상에 부여된 의미에 따라 다양한 분배원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샌델은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의 실질은 공동체인 사회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서 공동체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비로소 하나의 개인으로 형성되며, 이에 기초하여 사회적 연대와 공동선을 추구하며 시민의 미덕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 자원을 독점하거나 과도하게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체에 의한 재분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또한, 불평등이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와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재분배 주장으로는 불가능한 바람직한 정책을 찾아내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분배 정의와 공동선의 연관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고 한다(M. J. Sandel, 2009: 360-369).

왈저는 각 정의 영역에 고유한 정의원칙을 존중하면서 상이한 가치는 상이한 기준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복합평등(complex equality)이라 하는데, 이러한 복합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왈저에게 정의로운 사회이다. 복합평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왈저가 말하는 지배와 독점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지배(dominance)는 어떤 재화의 소유로 인해 다른 재화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독점(monopoly)은 어떠한 재화이든 그것을 소수의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배원칙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왈저는 지배를 방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즉 사회의 부정의는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가진 자가 교육이나 의료 등 다른 영역의 재

화까지 침범하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왈저는 각 영역에서 설사 재화에 대한 독점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재화가 각 영역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교환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를 복합평등사회(complex egalitarian society)라고 한다.

이렇듯 공동체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분배원칙을 어느 한 원칙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분배원칙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공동체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롤즈처럼 차등원칙을 허용한 상태에서 그것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수정하는 식의 정의론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주의는 각 정의영역에 따라 고유한 원칙에 의해 분배되는 정의론이다.

4) 맑스주의(Marxism)

맑스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적이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현상과 계급투쟁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맑스가 파악한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정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평에 근거한 정의였다. 동등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정의의 평등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며, 사실상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맑스주의자들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그것이 생산수단의 소유유무에 따라 계급 구분이 있기 때문이며, 계급의 존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착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분배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가 철폐되고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분배정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욕구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정치철학적 분배정의론 분류[5)]

구 분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	핵심가치	분배방법
자유지상주의	자발적인 교환이 보장되는 사회	자유	자유방임
공리주의	총효용이 극대화된 사회	총효용	총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배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두 가지 정의원칙에 의해 조직된 사회	공정성	공정한 차등
공동체주의	각 정의영역에 고유한 분배원칙이 실현되고 각 분배원칙이 서로 간에 침해되지 않는 사회 (복합평등사회)	정의영역에 따라 달라짐	각 정의영역에 공동체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짐
맑스주의	욕구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	평등	결과의 평등

5) 이혜경, 배분정의와 사회복지, 1997; 박홍식, 분배원리에 관한 서설적 연구, 1985 필자 재정리

제 2 절 분배정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분배정의에 관한 이론 연구는 적지 않지만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는 10편도 되지 않는다. 우선 이혜경 외 (1997), 박세영과 Harrison(1998), 남찬섭(1998), 이정우(2006), 전성표(2006), 오윤수(2010)의 연구가 있다. 이혜경 외(1997)의 연구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1997년 이후 3년간에 걸쳐 우리시회에서 수용되는 분배정의 원칙을 규명하고 이러한 원칙이 사회복지영역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복지 모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보고서 중 제1차년도 연구보고서가 본 논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 연구는 분배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치철학적 논의와 실증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분배원칙으로 형평, 평등, 욕구라는 세 가지 원칙을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영역(소득, 의료, 주택, 사회복지서비스)별 국민의 분배원칙 지지 성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매우 방대하여 연구결과를 다 언급할 수 없기에 필요한 사항만 서술하기로 한다.

우리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연령이 젊을수록, 욕구원칙을 지지할수록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또 전문대 졸업자 이상의 학력자가 중졸 이하의 학력자에 비해, 전문직·사무직 종사자가 미취업·주부에 비해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인식하였다. 주택소유자는 전세자에 비해 국가책임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가지 지지 성향 중 욕구원칙의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등과 형평의 순서를 보였다. 소득영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조세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대한 질문은 8문항이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사회적 위험은 개인이 대처해야 한다'는 형평원칙과 '근로무능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욕구원칙, '빈민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평등원칙에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은 지지경향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평등원칙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높은 지지경향을 보였다. 의료영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욕구원칙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며 형평원칙, 평등원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병원이용에 장애가 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인구, 경제, 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주택영역은 네 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국가가 기본주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욕구원칙에 강한 지지를 보냈으며 평등원칙, 형평원칙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이 낮고 주거사정이 열악할수록 욕구원칙을 선호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사회에 대한 불공정 인식과 연관이 높게 나타났는데, 평등원칙과 욕구원칙에 대한 선호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반면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는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론과 실증이 겸비되었고 방대한 연구라는 것과 함께 사회복지 영역별 분배원칙의 선호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박세영과 Harrison(1998)은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통해 분배에 있어 투입과 성과의 관련성과 분배원칙의 선호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분배기준을 형평, 균등, 절충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능력보다 노력의 가중치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보상과 성취관련 보상의 가중치를 비교한 결과는 공정성 지각에 대하여 한국은 경제적 보상의 가중치가 높았으나 미국은 성취관련보상의 가중치가 높았다. 투입수준이 다른 경우 한국 대학생은 균등분배, 형평분배, 절충분배 순으로 선호하였고, 미국 대학생은 형평분배, 균등분배, 절충분배 순으로 선호하였다. 투입이 같은 경우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 모두 균등분배, 절충분배, 형평분배 순으로 선호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균등분배를 선호한 사람은 388명, 절충분배는 157명, 형평분배는 75명이었다.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균등분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전반적인 분배정의론에 바탕을 둔 연구라기보다는 형평과 균등의 두 요인에 대한 선호에 대한 실험연구라는 한계점으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남찬섭(1998)은 박사학위논문에서 서울 시민 대상으로 일반인들의 분배정의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는 분배정의의 기준을 형평, 제한적 욕구, 전반적 욕구로 분류하고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성 명제, 역사적 변천명제, 이기심 명

제를 독립변수로 이념명제(사회불공정성 인식수준으로 측정)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 욕구원칙을 더 선호하고 고학력자가 형평원칙을 오히려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명제의 매개변수적 역할은 형평원칙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났으며 분배원칙에 대한 선호도는 이혜경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제한적 욕구원칙, 형평원칙, 전반적 욕구원칙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찬섭의 연구는 상대적 불안정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반적 욕구원칙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였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정우(2005)는 박사학위논문에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는 분배정의의 기준을 귀속, 결과, 사회적 보장(노력), 필요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평등을 기회와 결과의 평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는 북한의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평등을 선호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분배기준에 있어서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남한이 북한보다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보면 남한 청소년들도 평등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하위단위로 내려가면 '경제성장 대 평등', '차별 대 평등', '경쟁 대 평등'에서 남한 청소년이 북한 청소년보다 평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분배기준으로는 남북 청소년 모두 결과에 따른 분배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보다 차별적인 분배기준을 더 선호하였다. 남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북한 청소년보다 남한 청소년들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의 연구는 남과 북의 청소년들의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연구함으로써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전성표(2006)는 정의를 분배정의, 과정적 정의, 인간관계적 정의로 구분하고 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을 연구하였다. 전성표는 분배기준으로 기여(형평), 기여 잠재력, 욕구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과 연관된 분배정의와 평등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는 기여에 따른 보상

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여성의 경우 외국은 일반적으로 욕구에 의한 분배를 선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여에 따른 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과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욕구에 따른 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향에 따른 분배원칙의 선호를 보면 계층이나 학력, 가족의 수 등은 분배기준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없다. 반면 정치적 성향의 경우 기여나 기여 잠재력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욕구에 따른 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욕구기준을 선호하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령과 반대로 실질적 기여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의식과 분배정의감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분배정의감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믿고 있으며,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대체로 평등의식이 높고 분배정의감도 높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믿는다. 역시 낮은 계층일수록 사회의 불평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다. 전광표의 연구는 정의를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정의가 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었고 분배정의의 각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집단과 개인 특성에 따라 밝힌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오윤수, 2010: 40-43 재인용).

오윤수(2010)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유형을 조사하여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보편주의에 의한 복지정책중시형이고, 두 번째는 시장기제에 의한 개인능력중시형, 세 번째는 사회연대를 통한 생존권 중시형이고, 마직막으로 기회균등을 통한 생활보장중시형으로 명명했다. 공통된 견해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사들은 유형과 상관없이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과 공적 기제에 의한 재분배에 찬성하였다. 각 유형간에 서로 대립되는 설문에 주로 형평기준에서 유형 2는 형평기준에 찬성하는 한편 나머지 세 유형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분배정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배정의 관련한 실증적 연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분배정의 관련 실증적 연구

연구분야	저자	연도	제 목	분류기준
국민인식 조사	이혜경	1997	배분정의와 사회복지1차보고	평등, 형평, 욕구
한국과 미국 대학생 비교	박세영	1998	형평이론에서 투입과 성과요인의 가중치와 분배원칙 선호	형평, 균등, 절충
일반인의 인식조사	남찬섭	1998	복지국가에 있어서 분배정의: 정치철학적 정의론과 일반인들의 분배정의 인식	형평, 전반적욕구, 제한적욕구
남북청소년 인식비교	이정우	2006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사회 의식비교연구-	귀속, 결과, 노력, 필요
서구와 인식 비교	전성표	2006	배분적정의, 과정적정의 및 인간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 인식	기여, 기여잠재력, 욕구
사회복지사 인식조사	오윤수	2010	분배정의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식유형	평등, 공적, 욕구, 권리

제 3 절 분배정의 원칙의 개념 및 분배제도

분배정의는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된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를 지칭하지 않으며, 개인에 따라 차등있게 분배된 상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분배정의에서 중대한 문제는 차등대우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분배기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우선 대표적인 학자들이 거론하는 분배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에 유용한 분배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리주의자 밀(Mill)은 정의를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행위양식과 인사제도를 여론이라는 의견을 통하여 여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권리로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 재산 등 본인에게 속한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도덕적 권리가 있다. 셋째, 형평으로 각 개인이 얻는 자원은 그가 행한 공적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넷째,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 공평한 것이 정의이다. Mill은 공평 그 자체를 의무로 여기지는 않으며 다른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적 의무로 보는 것 같다(허남결, 1996: 267-291). 그는 공평의 기준으로 한편으로는 공적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말한다. 여섯째, 평등이다. Mill은 “많은 사람의 눈에는 평등이 정의의 한 요소가 아니라 본질로 비쳐진다”고 하여 평등을 정의의 일차적 요소로 파악한다. Mill의 분배기준 중 신뢰는 기준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며 공평도 분배기준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으로, 만약 공평이 분배기준이 되면 무엇이 공평한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권리기준으로 통합하면 Mill이 말하는 정의의 요소 중 분배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권리, 공적, 평등으로 압축된다(오윤수, 2010: 14).

레셔는 분배의 기준을(Rescher, 1966: 73-83), 평등, 욕구, 능력 및 그에 따른 업적 또는 성과, 노력 또는 희생, 기여, 사회적 효용(공공의 선), 수요와 공급이 그 일곱 가지 기준이다(황경식, 1956; 김기덕, 2002 재인용). 레셔의 기준 중 능력이나 업적, 성과와 노력 및 희생, 기여 등은 형평에 기반하는 분

배기준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사회적 효용은 사회적으로 고려된 욕구로 분류된다. 결국 그의 분배기준은 평등과 욕구, 형평으로 단순화 할 수 있다(지은구, 2005: 오윤수, 2010: 14).

한편 페렐만(Perelman, 1986)은 정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나열한다. “동일범주의 성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할 것, 그의 공과에 따라 응분의 대우를 할 것, 각자에게 일에 비례하여 대우할 것,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배분할 것, 각자에게 지위에 따라 대우할 것, 각자에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배분할 것” 그것이다. 이 중 공과와 일의 비례는 결국 형평으로 귀결되고 지위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되기 어렵기 때문에 페렐만의 분배기준은 평등, 욕구, 형평 그리고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오윤수, 2010: 14).

그리고 이준구는 분배정의를 이루는 요소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권리이고, 둘째는 공정성이다. 셋째는 평등성이고, 넷째는 응분의 자격이다. 응분의 자격에는 능력, 노력, 필요 등이 있는데 이 응분의 자격은 형평과 욕구로 나뉜다(이준구, 1992: 44-47). 능력과 노력은 형평의 한 요소이고 필요는 욕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준구가 말하는 분배기준은 권리, 평등, 형평, 욕구로 요약할 수 있다. 공정성은 Mill을 언급할 때 말했듯이 분배의 당위성에 대한 기준이기에 생략 가능하기 때문이다(오윤수, 2010: 14).

사회복지학자인 리머는 분배정의의 기준을 평등, 욕구, 보상, 기여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Reamer, 2002: 173). 보상의 윤리적 정당성은 과거 특정한 집단이 받은 공정하지 못한 처우에 대한 보상으로써 현재의 부정의한 결과를 원래의 바람직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보상은 자본주의에 윤리적 정당성을 제공한 공리주의가 미래의 상태에 대한 기준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학자로서의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상은 일반적으로 형평(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결국 리머가 말하는 보상과 기여는 형평으로 정리하면 평등, 욕구, 형평으로 분류된다(오윤수, 2010: 14).

또 밀러(Miller, 1976)는 정의의 일반적 이론은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권리, 형평, 욕구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밀러의 정의론은 사회적

가치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된다. 즉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사회의 정의는 소유에 대한 권리와 형평의 두 요소만이 강조될 것이고 사회적 또는 집합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는 필요에 따른 욕구 분배가 강조될 것이다(지은구, 2005: 393-394; 오윤수, 2010: 14).

블라스토스(Vlastos)는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가치에 따라, 각자의 노동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계약에 따른 분배"이다(Vlastos, 1962: 35; 이종수 2013: 154). 일반적으로 노동과 능력은 형평에 따라 분배하고, 필요와 가치는 욕구로 분배 가능하므로 블라스토스의 분배는 형평, 욕구, 권리로 정리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학자들의 분배기준 분류

학 자	기준 분류	조작적 단순화
Mill	법적 권리, 도덕적 권리, 형평, 신뢰, 공평, 평등	평등, 형평, 권리
Rescher	평등, 욕구, 능력(업적), 노력 기여, 사회적 효용, 수요와 공급	평등, 형평, 요구
Perelman	평등, 형평, 결과, 필요, 계급, 법	평등, 형평, 욕구, 권리
이준구	권리, 공정, 평등, 응분의 자격	평등, 형평, 권리, 욕구
Reamer	평등, 욕구, 보상, 기여	평등, 형평, 욕구
Miller	권리, 형평, 욕구	형평, 욕구, 권리
Vlastos	필요, 가치, 노동, 능력과 업적, 계약	형평, 욕구, 권리
Hosper	평등, 노력, 업적, 필요, 능력	평등, 형평, 욕구
Hochschild	평등, 필요, 투자, 결과, 귀속	평등, 형평, 권리
Nozick	권리, 자기소유권, 소유권리론	형평, 권리

이상과 같은 여러 학자들의 기준을 통해 분배정의에 대한 기준을 도출해보면 평등에 근거한 분배, 형평에 근거한 분배, 욕구에 의한 분배, 권리에 의한 분배라는 네 가지의 기준이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분배 기준을 평등, 형평, 욕구라는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Frankena, 1961; 정용덕, 1984; 황경식, 1986; 이혜경 외, 1997; 지은구, 2005). 그러나 〈표 3〉에서 보듯이 Mill이나 이준구, Perelman, Miller 등 여러 학자들이 평등과, 형평에 대하여는 공통의 분배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평등과 형평에 따른 분배원칙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평등에는 욕구원칙의 개념이 이미 내재되어 있고 이 욕구원칙을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적용시키는가의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두에서 밝혔듯이 사전조사에서 욕구와 평등의 원칙이 분리되지 않음에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개념의 평등원칙을 사용하고자 한다.

1) 분배정의 원칙의 개념

가) 평등의 원칙

평등기준의 분배관은 모든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며, 모두에게 어떤 절대적 인권들이 똑같이 부여된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평등'을 처음으로 체계화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로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산술적 평등(arithmetical equality)'과 '비례적 평등(proportionate equality)'의 개념을 전개하였다(박호성, 2002: 29-30).

아리스토텔레스의 평등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P에 대한 A의 몫}}{\text{P에 대한 B의 몫}} = \frac{\text{A의 Q 소유}}{\text{B의 Q 소유}}$$

여기서 P는 경제적 재화, Q는 인간성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은 인간성(Q)을 똑같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경제적 부(P)도 평등하게 분배받아야 한다. 이 정식은 비례적 평등으로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서 경제적 재화도 동등하게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만 생산되는 사회에서는 평등주의적 분배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본적인 욕구도 증대하지만, 그런 욕구를 채우고도 남는 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잉여의 분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된다. 이런 잉여까지도 평등주의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차등있게 분배되려면 차등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평등의 개념은 함축하는 바가 많은데, 적어도 하나의 국면에서 동질성을 지니는 상이한 사물, 사람 과정 사이의 상사성(相似性)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말의 의미는 '동일하다'의 의미보다는 '유사성'을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이종수, 2013: 156-157)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이나 하이에크는 평등은 자발적인 교환으로 얻은 소유권은 그 자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연적 능력의 차이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롤즈(Rawls)는 권력이나 소유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평등을 개념화하고 기회균등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wls, 1958: 220). 한편 하이에크도 "빠른 경제적 진보는 불평등의 결과이며, 또 불평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불평등이 초기에 부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상품이 일반인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박상수, 2003: 188 재인용).

결국 평등의 개념으로 기회의 평등과 대조적의 의미로서의 결과의 평등 그리고 조건의 평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자유주의에 속하는 이념은 모두 불평등론이며, 기회의 평등이다. 그리고 조건의 평등과 결과로서의 평등은 맑스주의와 연관되는 개념이며, 공동체주의자들은 소유권을 성격에 따라 세 가지 평등의 개념 중 특정한 것을 옹호할 것이다.

나) 형평의 원칙

분배적 정의는 형평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투자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때 공평 또는 정의가 성립된다.

형평성의 핵심은 '제 몫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제 몫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양하나 형평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의 기준을 적용하는 이념이다.

왈저는 사회적 삶을 영역을 동일한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여 그 가치의 본질에 적합한 분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돌바크도 정의의 본질을 형평성으로 파악한다. 그는 정의의 개념은 각자의 재능과 공적에 따라 대우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d'Holbach, 1776: 105-106; 이종수, 2013: 153). 지금까지 이론을 살펴보았을 때 형평의 원칙은 평등원칙과 불평등의 원칙을 모두 함께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각자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한다는 형평원칙은 분배가 공정함을 보장하는 불가분의 조건이다. 또한 이 기준은 자유와 모순되지 아니하며 효율을 증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평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여 그것이 오히려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못된다(이성우, 1983: 106-107). 〈표 4〉는 형평성과 관련된 쟁점을 공정성의 다차원적 측면과 상대적 측면을 정리한 것이다(이성우, 2013: 222).

〈표 4〉 형평성과 관련된 쟁점들

분배의 차원	쟁점 (차별의 근거, 기준)	딜 레 마
정당한 수혜자 (beneficiary)	수혜자의 자격(멤버십)	초대받은 모든 수혜자에게 같은 크기로 분배/불평등한 초대 (수혜자 자격의 경우)

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서열에 기초한 분배	같은 서열(계층, 업적)에 같은 크기로 분배: 다른 계층에게는 다른 크기로 분배 (수직적 공평성, 예: 남녀임금차이)
	집단에 기초한 분배	집단별 평등 분배/집단 구성원인 개인 간 불평등 분배: 집단특성이 개인특성 압도 (인종, 성별, 국적 등 기준: affirmative action, 병역의무, 군가산점, 할당제 등)
분배 품목(item)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분배품목의 범위(경계)의 재정의	전체로서는 동등한 품목/부분별로 다른 크기 (예: 대학생 학비보조 기준, 군비축소)
	품목 가치의 재정의	수혜자별 동등한 가치/품목은 다른 크기 (다속성 가치기준의 갈등, 예: 크기, 무게, 멋, 맛 등)
분배과정 (process)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경쟁: 출발 자원으로서의 기회	평등한 참여기회/다른 크기 (예: 공직 임용, 공공시설 이용 등)
	추첨: 통계적 당첨 확률의 평등	공정한 당첨기회/다른 크기
	투표: 정치적 참여기회의 평등	공정한 투표기회/다른 크기

* 평등(equality):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품목을 동일한 크기로 분배함을 의미.

* 출처: D. Stone (2002, chapter 2.) 참조하여 이성우(2013)재정리.

* 이성우,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 2013 재인용.

2) 분배제도

복지사회의 건설은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간의 물질적 정신적 나눔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 분배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분배정책이란 분배적 불균형 즉 부의 편재, 구성원 간의 욕구 불충족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로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소득이나 자산의 분배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사회구성원간 나눔의 대상을 소득과 자산으로 할 경우 분배정책의 활동영역이 제한될 수 있다. 후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 상호가 동등하기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6] 소득이나 자산의 나눔은 물론 자아실현의 기회가 개인 신분에 의해 불평등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다(신청호, 2007: 183-185).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소득분배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평등화하는 정책이고, 두 번째는 소득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분배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된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소득원천의 평등화 정책은 소득을 결정하는 가정 중요한 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중심으로 이들 요소들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확대하거나 높여줌으로서 소득획득능력(earnings capacity)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소득결정과정에서의 분배정책이란 대표적인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에 의해 생산과 총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목표로 하면서,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설정한다거나 독점 또는 과점을 금지한다든지 혹은 노동자 측의 임금교섭력을 보장하거나 높여준다든지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소득의 재분배정책이란 일단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소득결정과정에서 결정된 소득을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하여 재분배하는 것으로서, 누진적인 조세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김기덕·손병돈, 1996: 123-124).

---

6) 강용욱 외 14인 공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4: 104-114.

가) 사회보장제도

우선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빈자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전을 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분배효과는 가능한 많은 빈자를 포괄할수록, 그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평등의 분배정의에 접근한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의 협소성과 급여수준의 박약으로 의미있는 정책효과 발생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기덕·손병돈, 1996: 131, p.137). 이에 사회보장정책에서는 먼저 생애주기에 있어서 위험이 닥쳤을 때, 이에 대한 대비로서 기존에 존재해왔던 개인적 대처(형평원칙)와 사회보장(평등원칙)에서 어느 것이 선호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나) 조세정책

일반적으로 국가의 분배정책은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으로 구성된다. 사회정책이 국가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라면, 조세정책은 국가의 과세행위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조정하는 정책수단이다. 즉 사회정책이 복지혜택의 분배에 해당한다면, 조세정책은 비용부담의 분배에 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김도균, 2013: 4-34). 그리고 국가의 재정지출이 일차적으로 조세수입에 의존한다고 할 때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은 매우 긴밀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지닌다(김도균, 2013: 87-89). 그러나 현 조세부담 수준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힘들 정도로 낮게 유지되어 왔으며, 낮은 조세부담에 대한 이해관계 또한 매우 강하게 지속되어 왔다(남찬섭, 2008: 33-59). 이에 국가의 능력에 따른 소득격차의 존재의 필요(형평원칙)와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평등원칙)에서 어느 것이 선호되는 지를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소득영역항목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다) 의료보험제도

상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의료의 보장 또는 의료비의 부담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제도로서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부상·사망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을 통하여 일시에 가계지출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에 지불능력에 따

른 의료서비스의 차등(형평원칙)을, 그리고 동질의 의료서비스보장(평등원칙)중 어느 것이 선호되는지 알아보았다.

라) 주택정책

지금까지 주택정책의 목표는 대부분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이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제적 분배현실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의 유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시장 메커니즘에서 파생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에 시장에서의 주택의 상품성을 전제(형평원칙)와 국가의 주거권보장(평등원칙)으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마)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일생생활을 영위하면서 노령, 사고,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감소상태에 대비하여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기여를 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 과거의 기여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액을 지급받는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 제도이다. 또한 연금제도는 그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며, 국가가 관리하고, 급여의 제공이 누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연금제도는 기여에 따른 급여라는 분배정의 중 형평성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김기덕·손병돈, 1996: 137).

이렇듯 사회보험의 원리에는 분배정의의 평등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형평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기덕·손병돈, 1996: 166). 이에 납부실적에 따른 연금 수급(형평원칙)과 납부실적과는 관계없이 최저한의 연급 지급(평등원칙)으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을 다루고자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근로자라는 한계가 있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다룰 분배원칙은 평등원칙과 형평원칙으로 형평원칙은 일반적인 의미 그대로 분배 몫을 받을 사람이 가진 긍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비례하도록 분배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원칙은 분배 몫을 받을 사람이 가진 부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적 특성과 분배대상이 되는 욕구의 원칙을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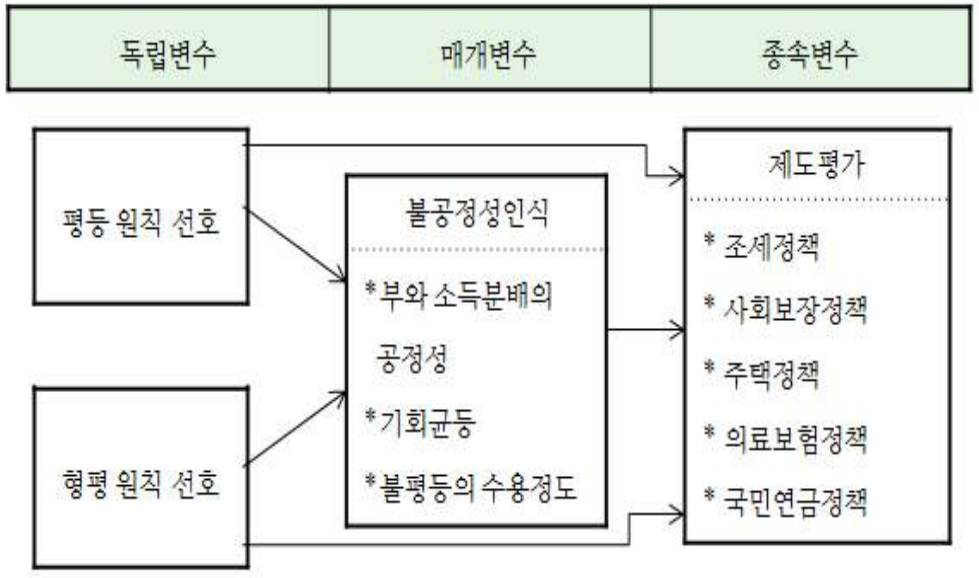

종속변수로는 현 분배제도의 공정성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정치철학적 정의론을 고찰하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도 공정성 평가는 현재 시행되

고 있는 제도 중 분배와 부합되는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주택제도, 국민연금제도의 공정성 평가에 대하여 질문해 보았다. 매개변수는 사회의 불공정성인식을 부와 소득분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 불평등의 수용정도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먼저 성별, 연령, 학력, 개인소득,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인식, 생활의 만족도, 거주지, 주거형태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를 얼마나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가를 질문한 선행연구로는 독일사회에 대한 공정성인식을 조사한 뮐러의 연구(muller, 1993)를 들 수 있다. 뮐러는 독일인들이 독일 사회를 얼마나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이에 관한 질문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독일 사회에서의 부와 소득의 분배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차원이며, 둘째는 독일 사회에서의 기회가 얼마나 균등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차원이고, 셋째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독일인들이 얼마나 동의하는가의 차원이다. 뮐러가 사용한 공정성 인식에 관한 질문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Muller의 공정성 인식 조사 문항[7)]

구 분	설 문 내 용
이윤과 재화의 분배정의에 대한 평가	기업이윤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
	사회적 격차는 정당하다
기회의 불평등 인식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전통적인 계급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의 성취는 가족 배경에 좌우된다
	개인의 성취는 그 자신의 능력과 교육에 좌우된다
	개인의 성취는 사회적 서비스에 따라 좌우된다
불평등의 수용정도	사회적 격차는 개인의 노력유인이 된다
	사회적 격차는 자신의 기회활용, 노력 등에 좌우된다
	기업의 이윤이 커질수록 모두에게 이익을 될 것이다

7) 이혜경, 배분정의와 사회복지, 1997 필자 재정리

뮐러가 구분한 공정성 인식의 세 가지 차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 기회균등정도에 대한 인식, 불평등의 정당화 정도로 말할 수 있다. 뮐러가 사용한 이 질문은 이혜경의 1996년 전국조사와 남찬섭의 1998년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다소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 공정성 인식의 차원을 세 가지로 구분한 뮐러의 연구를 채택하였으며 각 자원에 포함된 질문의 수와 문구는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가설 설정

연구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설정 되어 있는데. 이는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가설 1. 집단별 분배원칙 선호에 관한 연구 가설

가설 1-1. 정치인이 일반인보다 평등원칙을 보다 선호할 것이다.
가설 1-2. 여성이 남성보다 평등원칙을 보다 선호할 것이다.
가설 1-3. 연령이 낮을수록 평등원칙을 보다 선호할 것이다.
가설 1-4. 소득이 낮을수록 평등원칙을 보다 선호할 것이다.
가설 1-5.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평등원칙을 보다 선호할 것이다.
가설 1-6. 현 생활수준 만족도가 낮을수록 평등원칙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2. 집단별 분배제도 공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가설

가설 2-1. 일반인이 정치인보다 현 제도를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가설 2-2. 남성이 여성보다 현 제도를 보다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가설 2-3. 연령이 높을수록 현 제도를 보다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가설 2-4. 소득이 높을수록 현 제도를 보다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가설 2-5.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현 제도를 보다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가설 2-6. 현 생활수준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 제도를 보다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가설 2-7.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현 제도를 보다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가설 3. 분배원칙선호가 불공정성인식을 매개로한 제도 평가 연구 가설

가설 3-1-1 형평원칙 선호는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2 형평원칙 선호는 기회균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3 형평원칙 선호는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1 평등원칙 선호는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2 평등원칙 선호는 기회균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3 평등원칙 선호는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1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은 제도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2 기회균등은 제도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3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제도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4 형평원칙 선호는 제도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5 평등원칙 선호는 제도평가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3) 설문문항 설정

설문문항은 독립변수로는 분배원칙 선호에서 분배제도의 형평원칙선호에 대한 6문항, 평등원칙 선호에 대한 6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분

배제도 중 조세정책 사회보장정책, 주택정책, 국민의료보험정책, 국민연금정책의 제도공정성 평가에 대한 5문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불공정성의 인식의 경우 Muller의 공정성 인식 조사 문항 중 부와 소득분배의 2문항, 기회균등의 2문항,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3문항 이용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의 작성은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작성되었다. 설문문항의 모든 질문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문항 구성은 〈표 6〉과 같다

〈표 6〉 분배원칙 선호와 분배제도 평가 연구 설문 문항 구성

영 역		내 용	문항번호
독립변수	분배정의 기준선호도	사회보장정책(평등, 형평, 욕구)	Ⅲ. 16~18
		의료보험정책(평등, 형평, 욕구)	Ⅲ. 20~22
		주택정책(평등, 형평, 욕구)	Ⅲ. 24~26
		국민연금정책(평등, 형평, 욕구)	Ⅲ. 32~34
		소득격차부문(평등, 형평, 욕구)	Ⅲ. 12~14
		복지혜택확대(평등, 형평, 욕구)	Ⅲ. 28~31
매개변수	사회불공정성 인식	부와 소득분배의 공정성	Ⅰ. 1, 3
		기회 균등	Ⅰ. 2, 5
		불평등의 수용 정도	Ⅰ. 4
종속변수	분배제도 공정성 평가	조세정책, 사회보장정책, 주택정책, 국민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Ⅲ. 15, 19, 23, 27, 35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우선 일반인 대상의 경우 서울·경기 통계청 인구자료와 비교하여 성별, 연령별, 행정구역별 등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확률표본 추출 방법으로 서울거주자, 수도권과 광역도시 거주자, 기타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로 구분하여 435명을 선정하였다.

공무원 대상의 경우 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서울은 보건복지부 근무자 59명, 서울시청 근무자 30명, 구청의 경우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여, 강남은 양천구청, 강동구청, 강남구청 근무자 52명, 강북의 경우 도봉구청, 성북구청, 종로구청의 근무자 55명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남과 북으로 구분하여 남쪽은 양평군청, 안양시청, 안산시청 근무자 87명, 북쪽 지역의 경우 양주시청, 가평군청, 의정부시청 근무자 6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은 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치인의 경우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새누리당 소속 46명, 민주당 소속 34명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865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집단간 평균차의 검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술통계는 질문별로 응답 범주별 빈도분석과 평균의 제시가 이루어 졌다. 집단간 평균차의 검증은 분배원칙 선호와 불공성성 인식, 제도공정성 평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분배원칙과 제도공정성 평가가 통계적으로 각각의 요인으로 묶이는가를 검증하였으며, 독립변수에 이어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구 모형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표 7〉에는 주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과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관련된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 7〉을 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성별과 거주지역에 있어서 남자(45.4%)와 여자(54.6%)의 비중 및 서울거주자(57.7%)와 수도권 등 그 외 도시로(42.3%)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외 40대가 각각 31.4%와 2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양가족은 아동 및 중고등 학생이 있는 가구가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생이 21.1%, 노인 및 장애인의 부양가족이 20.8%로 나타났으며 가족원 수에 있어서는 3~4인 가족이 6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3.28명이다

주거형태별로 조사대상자를 보면 자택을 가진 사람(56.5%)이 전세나 월세 등 그 외 거주자(43.5%)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교육 수준은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자와 중퇴자 및 졸업자를 모두 졸업자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4년제 이상의 대졸자 비율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집단 350명과 국회의원 보좌진 80명이 있어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개인소득은 연속변수로 질문하였으나, 표에는 세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400만원 미만은 48.5%에 이르고 400만원 이상은 18.8% 이었다.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400만원 미만은 30.4%에 이르고 400만원 이상은 58.6% 이었다. 이는 학력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집단과 보좌진집단이 있어 소득 또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주 소득원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가 76.3%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 가구소득은 평균 4,375천원이고, 개인소득 평균은 2,303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전체조사대상자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93	45.4
	여자	472	54.6
	합계	865	100
연령	20대	161	18.6
	30대	272	31.4
	40대	234	27.1
	50대	143	16.5
	60대	55	6.1
	합계	865	100
거주지	서울	497	57.7
	수도권/ 광역도시	209	24.2
	기타 도시/ 농어촌	156	18.1
	합계	862	100
직업	공무원	436	50.6
	회사원	241	28
	자영업자	27	3.1
	전업주부	54	6.3
	무직 / 기타	104	11.3
	합계	862	100
평균 월소득	200만원 미만	251	32.8
	200-400만원 미만	372	48.5
	400만원 이상	144	18.8
	합계	767	100.0
가정 월소득	100만원 미만	7	0.9
	100-200만원 미만	80	10.2
	200-300만원 미만	119	15.2
	300-400만원 미만	119	15.2
	400-500만원 미만	128	16.3
	500만원 이상	332	42.3
	합계	785	100.0
주거 형태	자택	485	56.5
	전세	243	28.3
	월세	61	7.1
	전월세이지만 다른 곳에 집이 있다.	46	5.4
	기타	24	2.8
	합계	859	100.0

구 분		전체조사대상자	
		빈도(명)	비율(%)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146	17.0
	전문대학	156	18.1
	대학교	447	51.8
	대학원	114	13.2
	합계	863	100.0
가족원 수	2명이하	197	22.8
	3-4명이하	537	62.1
	5명 이상	131	15.1
	합계	865	100
주관적 계층인식	상층	5	0.6
	중상층	71	8.3
	중간층	427	49.7
	중하층	308	35.9
	하층	48	5.6
	합계	859	100
생활수준 만족도	매우 불만족	34	4.0
	약간 불만족	165	19.2
	그저 그렇다	360	41.9
	약간 만족한다	252	29.3
	매우 만족한다	49	5.7
	합계	860	100
부양가족	취학 전 아동	190	19.2
	초중고학생	384	38.8
	대학생	209	21.1
	65세 이상 노인	183	18.5
	장애인	23	2.3
	합계	989	100

본 연구대상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과 보좌진을 제외하면 회사원이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6.3%의 전업주부가 차지하였다. 그 외 자영업자가 3.1%, 계약직을 포함한 기타와 무직이 11.3%의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 계층인식은 중상층이상이 8.9%, 중간층이 49.7%, 중하층이 35.9%, 하층이 5.6%의 인식을 보였으며 현재의 생활수준 만족도는 만족이 35.0%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 23.2%, 그저그렇다가 41.9%의 응답을 하였다. 이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하층이하의 경우 41.5%이나 생활수준 불만족이 23.2%로

주관적 계층인식보다 현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계층인식은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공무원과 국회위원 보좌진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표 8〉에서는 복지혜택확대를 위한 세금인상 방식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제 방식'을 응답한 사람이 586명(69.3%)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의 일정비율을 정해서 더 내는 방식'을 응답한 사람은 227명(26.9%)로 두 번째로 많았다. '모두 똑같이 더 내는 방식'을 응답한 사람은 20명(2.4%), '기타'의 경우 12명(1.4%)로 나타났다.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으로 집단을 구분 후 빈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제 방식'이 세 집단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났다.

〈표 8〉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세금인상 방식

구분	공무원 (N=350)	일반인 (N=435)	정치인 (N=80)	전체 (N=865)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모두 똑같이 더 내는 방식	5(0.6)	13(1.5)	2(0.2)	20(2.4)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제 방식	246(29.1)	286(33.8)	54(6.4)	586(69.3)
소득의 일정비율을 정해서 더 내는 방식	86(10.2)	121(14.3)	20(2.4)	227(26.9)
기타	5(0.6)	3(0.4)	4(0.5)	12(1.4)

제 2 절 분배원칙 선호도 비교

1) 단순 평균값 비교

가)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도

분배정의 기준 중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의 경우 평균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형평원칙을 선호함을 나타낸다. 〈표 9〉는 형평원칙 선호에 대한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표 9〉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도(조사대상자 별)

구분	공무원 (N=350)		일반인 (N=435)		정치인 (N=80)		전체 대상자 (N=865)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412	0.49	3.305	0.519	3.404	0.454	3.357	0.504
사회보장정책	2.9	0.867	2.731	0.923	2.588	0.774	2.786	0.892
의료보험정책	3.206	0.908	3.06	1.021	3.45	1.018	3.155	0.983
주택정책	3.84	0.854	3.756	0.9	4.025	0.779	3.815	0.874
국민연금정책	3.699	0.819	3.728	0.824	3.638	0.815	3.708	0.821
조세정책	3.937	0.617	3.805	0.815	4.075	0.725	3.883	0.737
복지혜택확대	2.869	1.013	2.768	1.027	2.65	0.887	2.798	1.01

분배정의 기준 중 형평원칙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 전체대상자 모두 ‘조세정책’에서 형평원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보장정책과 복지혜택확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복지혜택확대’가 일반인, 정치인은‘사회보장정책’에서 형평원칙을 가장 낮게 선호하였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형평원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의 보호 부문은 형평의 원칙보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분배정의 기준 중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도의 소득별 집단의 평균값을 분석

한 결과, 〈표 10〉과 같이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집단은 '조세정책'에 서 형평원칙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400만원이상 집단은 '주택정책'의 형평원칙 선호가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400만원이상의 소득자가 형평원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분배정의 기준 중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도(소득별)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 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362	0.529	3.284	0.532	3.391	0.462
사회보장정책	2.852	0.917	2.789	0.905	2.756	0.85
의료보험정책	3.147	1.025	3.042	0.962	3.206	0.955
주택정책	3.773	0.884	3.705	0.935	3.868	0.825
국민연금정책	3.711	0.858	3.668	0.808	3.733	0.807
조세정책	3.944	0.687	3.805	0.815	3.881	0.696
복지혜택확대	2.742	1.051	2.693	0.956	2.888	0.997

나)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도

〈표 11〉은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표 11〉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도(조사대상자 별)

구분	공무원 (N=350)		일반인 (N=435)		정치인 (N=80)		전체 대상자 (N=865)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5	0.562	3.661	0.575	3.725	0.606	3.602	0.579
사회보장정책	3.682	0.823	3.88	0.794	4.025	0.779	3.814	0.812
의료보험정책	3.951	0.677	4.002	0.805	4.1	0.704	3.991	0.747
주택정책	3.694	0.757	3.767	0.746	3.812	0.843	3.742	0.76
국민연금정책	2.699	1.039	2.951	1.042	2.913	1.081	2.846	1.05
조세정책	3.573	0.883	3.720	0.981	3.950	0.778	3.681	0.93
복지혜택확대	3.397	0.998	3.636	0.974	3.55	1.042	3.531	0.995

분배정의 기준 중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평균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원칙을 선호함을 나타낸다. 분배정의 기준 중 평등원칙 선호도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 전체대상자 모두 '의료보험정책'에서 평등원칙을 매우 높게 선호하였으며, '국민연금정책'을 가장 낮게 선호하였다. 그리고 평등원칙을 선호하는 집단은 정치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인이 정치인 집단보다 평등원칙을 더욱 선호하는 부문은 복지혜택 확대와 국민연금정책으로 나타났다.

〈표 12〉의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도 중 소득별 집단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평등원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분배정의 기준 중 평등원칙에 대한 인식도(소득별)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83	0.531	3.549	0.598	3.595	0.574
사회보장정책	3.803	0.744	3.751	0.854	3.844	0.812
의료보험정책	4.036	0.701	3.974	0.805	3.972	0.723
주택정책	3.76	0.727	3.76	0.715	3.729	0.781
국민연금정책	2.987	1.057	2.794	1.028	2.816	1.042
조세정책	3.73	0.853	3.582	0.977	3.715	0.921
복지혜택확대	3.734	0.917	3.428	1.006	3.495	0.987

다)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13〉는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표 13〉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대상자 별)

구분		공무원 (N=350)		일반인 (N=435)		정치인 (N=80)		전체 (N=865)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부와 소득분배의 공정성	전체	2.356	0.58	2.411	0.633	2.381	0.569	2.386	0.606
	경제 공정배분	2.241	0.686	2.294	0.804	2.225	0.693	2.266	0.748
	개인 성공좌우	2.467	0.793	2.523	0.868	2.537	0.692	2.501	0.822
기회균등	전체	2.755	0.732	2.86	0.814	2.768	0.762	2.809	0.778
	능력 노력성공	2.769	0.917	2.956	1.044	2.8	0.973	2.866	0.991
	제도 정책성공	2.738	0.783	2.762	0.903	2.737	0.853	2.75	0.851
불평등의 수용정도	개인 실패노력	3.232	0.849	3.232	0.979	3.337	0.992	3.242	0.929

불공정성의 인식의 경우 평균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를 공정한 것으로 인식함을 나타낸다.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분석 결과, 일반인, 공무원, 정치인 모두 '부와 소득분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은 전체대상자 모두 3점 이하의 부정정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공정배분'과 '제도정책성공'의 부문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3점 이상의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이는 현재 분배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용정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세 집단 중 일반인이 공무원과 정치인보다 사회를 더 공정하게 판단하였다.

〈표 14〉의 소득별 불공정성인식의 결과, 200만원 미만이 오히려 200만원이상 소득자보다 불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14〉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소득별)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부와 소득분배의 공정성	전체	2.446	0.638	2.369	0.599	2.381	0.596
	경제 공정배분	2.385	0.814	2.223	0.751	2.247	0.705
	개인 성공좌우	2.487	0.828	2.514	0.856	2.516	0.794
기회균등	전체	2.947	0.839	2.805	0.785	2.763	0.733
	능력 노력성공	3.062	0.991	2.877	0.988	2.796	0.97
	제도 정책성공	2.832	0.943	2.73	0.875	2.728	0.794
불평등의 수용정도	개인 실패노력	3.36	0.958	3.274	0.927	3.187	0.906

라) 분배제도 공정성평가

분배제도 공정성 평가의 경우 평균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함을 나타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표 15〉 분배제도의 공정성 평가 (조사대상자별)

구분	공무원 (N=350)		일반인 (N=435)		정치인 (N=80)		전체 대상자 (N=865)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657	0.544	2.702	0.612	2.68	0.528	2.682	0.578
사회보장정책	2.668	0.801	2.701	0.844	2.6	0.628	2.678	0.809
의료보험정책	3.095	0.788	3.131	0.829	3.375	0.753	3.139	0.808
주택정책	2.56	0.746	2.59	0.833	2.55	0.777	2.574	0.793
국민연금정책	2.65	0.738	2.596	0.895	2.55	0.778	2.614	0.824
조세정책	2.298	0.876	2.506	0.914	2.325	0.742	2.405	0.889

분배제도의 공정성 평가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 모두 평등원칙이 선호되었던 ‘의료보험정책’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였고 형평원칙이 선호되었던 ‘조세정책’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의료보험정책의 경우 평등원칙에 맞춰 보편적서비스로 소득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세정책의 경우 형평원칙에 따라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이 책정되지 않음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이 현 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공무원집단이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표 16〉 분배제도의 공정성 평가 (소득별)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85	0.684	2.673	0.567	2.694	0.528
사회보장정책	2.638	0.901	2.7	0.838	2.687	0.741
의료보험정책	3.055	0.818	3.121	0.794	3.19	0.798
주택정책	2.601	0.835	2.508	0.82	2.611	0.747
국민연금정책	2.607	0.952	2.642	0.791	2.602	0.782
조세정책	2.527	0.976	2.396	0.889	2.361	0.833

분배제도의 공정성 평가의 경우 소득별 평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의료보험정책과 주택정책을, 200 ~400만원 소득자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정책과 국민연금정책을, 200만원 미만 소득자는 조세정책을 가장 공정한 제도로 평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의료보험정책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였다.

마) 평등분배에 관한 인식

평등분배에 관한 인식의 경우 평균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인식함을 나타낸다. 다음의 〈표 17〉은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표 17〉 평등분배에 관한 인식(조사대상자 별)

구분	공무원 (N=350)		일반인 (N=435)		정치인 (N=80)		전체 대상자 (N=865)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법의 집행	2.438	0.965	2.515	1.030	2.650	0.901	2.497	0.994
소득과 재산	2.327	0.832	2.401	0.910	2.313	0.908	2.363	0.879
교육기회	2.914	1.006	3.048	1.072	2.888	1.102	2.979	1.050
취업기회	2.676	0.841	2.733	1.007	2.750	0.879	2.712	0.931
남녀 간	2.880	0.990	2.828	0.877	2.813	0.982	2.847	0.933
지역 간	2.705	0.917	2.690	0.884	2.700	1.011	2.697	0.909

평등분배에 관한 인식도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의 전체대상자 모두 '교육기회'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소득과 재산'이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으며, 법의 집행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불공정성 인식에서 '경제공정배분'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8〉은 소득별 평등분배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표 18〉 평등분배에 관한 인식(소득별)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법의 집행	2.595	0.985	2.506	0.976	2.465	0.998
소득과 재산	2.438	0.898	2.278	0.842	2.384	0.877
교육기회	3.085	1.044	2.911	1.055	3.000	1.038
취업기회	2.784	0.995	2.700	0.877	2.706	0.933
남녀 간	2.797	0.868	2.822	0.940	2.898	0.950
지역 간	2.699	0.825	2.611	0.878	2.743	0.949

평등분배에 대한 소득별 구분에 의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 집단은 법의 집행과, 소득과 재산, 교육기회, 취업기회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남녀간, 지역간 차이에서는 오히려 200만원이상 집단보다 부정정인 응답을 하였다.

제 3 절 . 집단 간 평균값 비교(T-test 및 ANOVA)

1) 성별에 따른 비교

〈표 19〉 성별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구 분		평균 값		평균차이	유의수준
		남	여		
부와 소득분배의 공정성	전체	2.417	2.359	0.058	0.162
	경제공정배분	2.283	2.252	0.031	0.545
	개인성공좌우	2.547	2.464	0.083	0.139
기회균등	전체	2.902	2.731	0.171	0.001***
	능력노력성공	2.941	2.804	0.136	0.044**
	제도정책성공	2.864	2.655	0.209	0.000***
불평등의 수용정도	개인실패노력	3.381	3.127	0.253	0.000***

* p〈.1, ** p〈.05, ***〈.01

〈표 19〉는 제 2 절에서 기술했듯이 불공정성의 인식의 경우 평균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를 공정한 것으로 인식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남/여 성별에 따른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기회균등'의 측정변수의 설문문항 '능력과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제도 등은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와 '불평등의 수용정도'의 측정변수 '개인의 실패는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모든 측정변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2013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한국 남녀 평등지수가 136개국 111위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이다.

〈표 20〉은 독립변수인 '분배원칙의 선호도'에 대한 남/여 성별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

〈표 20〉 성별에 따른 분배원칙기준 선호와 분배제도 공정성 평가

문 항			평균 값		평균차이	유의수준
			남	여		
분배정의원칙기준	평등원칙	전체	3.634	3.574	0.06	0.137
		조세제도	3.691	3.673	0.017	0.785
		사회보장정책	3.903	3.739	0.163	0.003***
		의료보험제도	4.007	3.976	0.03	0.544
		주택정책	3.791	3.701	0.09	0.089*
		복지혜택확대	3.564	3.503	0.061	0.373
		국민연금제도	2.842	2.848	-0.006	0.933
	형평원칙	전체	3.383	3.336	0.046	0.183
		조세제도	3.903	3.866	0.036	0.476
		사회보장정책	2.793	2.779	0.013	0.822
		의료보험제도	3.239	3.084	0.154	0.022**
		주택정책	3.837	3.796	0.04	0.503
		복지혜택확대	2.847	2.756	0.09	0.192
		국민연금제도	3.674	3.736	-0.061	0.279
분배제도 공정성 평가		전체	2.741	2.632	0.109	0.006***
		조세제도	2.436	2.379	0.056	0.349
		사회보장정책	2.783	2.591	0.192	0.000***
		의료보험제도	3.226	3.066	0.16	0.004***
		주택정책	2.626	2.531	0.094	0.087*
		국민연금제도	2.638	2.592	0.045	0.421

* p〈.1, ** p〈.05, ***〈.01

평등'의 측정변수 사회보장정책, 주택정책과 형평의 측정변수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종속변수인 제도공정성 평가와 측정변수인 사회보장정책, 의

료보험제도, 주택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모든 변수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2) 학력에 따른 비교

〈표 21〉 에서 보듯이 학력에 따른 매개변수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성공좌우'와 '개인실패노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학력에 따른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또한 2년대대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인식도가 4년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21〉 학력에 따른 불공정에 대한 인식

구 분		평균 값		평균차이	유의수준
		2년 대졸이하	4년 대졸이상		
부와 소득분배의 공정성	전체	2.842	2.683	0.160	.009***
	경제공정배분	2.374	2.210	0.165	.002***
	개인성공좌우	3.468	3.516	-0.048	.418
기회균등	전체	2.942	2.740	0.202	.000***
	능력노력성공	3.036	2.777	0.259	.000***
	제도정책성공	2.844	2.701	0.143	.019**
불평등의 수용정도	개인실패노력	3.315	3.206	0.109	.102

* p<.1, ** p<.05, ***<.01

다음의 〈표 22〉 학력에 따른 분배원칙 선호와 분배제도 공정성 평가 결과이다.

〈표 22〉 학력에 따른 분배원칙 선호와 분배제도 공정성 평가

문 항			평균 값		평균차이	유의수준
			2년대졸	4년대졸		
분배정의원칙기준	평등원칙	전체	3.565	3.623	−0.058	.169
		조세정책	3.586	3.736	−0.150	.024**
		사회보장정책	3.738	3.855	−0.117	.044**
		의료보험제도	3.914	4.034	−0.120	.024**
		주택정책	3.662	3.788	−0.126	.020**
		복지혜택확대	3.606	3.495	0.111	.117
		국민연금제도	2.903	2.813	0.090	.233
	형평원칙	전체	3.329	3.374	−0.045	.210
		조세정책	3.765	3.950	−0.185	.000***
		사회보장정책	2.834	2.757	0.077	.225
		의료보험제도	3.083	3.195	−0.112	.111
		주택정책	3.768	3.841	−0.073	.242
		복지혜택확대	2.768	2.813	−0.045	.537
		국민연금제도	3.767	3.681	0.086	.143
분배제도 공정성 평가		전체	2.740	2.650	0.090	.643
		조세정책	2.570	2.314	0.256	.000***
		사회보장정책	2.715	2.659	0.056	.330
		의료보험제도	3.050	3.189	−0.139	.016**
		주택정책	2.666	2.522	0.144	.011**
		국민연금제도	2.699	2.565	0.134	.023**

* p〈.1, ** p〈.05, ***〈.01

〈표 22〉에서는 학력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등’에서는 ‘소득격차부문’, ‘사회보장정책’, ‘의료보험정책’, ‘주택정책’에서 차이

가 나타났다. ‘형평’에서는 오직 ‘소득격차부문’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제도평가’의 경우 ‘사회보장정책’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측정변수 가운데 ‘평등’의 하위변수들은 모두 2년 대졸 이하 집단이 4년 대졸이상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형평’의 하위변수 ‘소득격차부문’도 2년 대졸 이하의 집단이 4년 대졸이상 집단에 비해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도 평가’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한 ‘소득격차부문’, ‘의료보험제도’, ‘주택정책’, ‘국민연금제도’에서 2년 대졸 이하보다는 4년 대졸이상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졸이상이 평등원칙을 선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도공정성 평가는 낮게 나타났으나 각 부문별 공정성에 대한 순위는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평등원칙에서 4년대졸과 2년대졸 모두 의료보험제도에서 평균원칙을 더 선호하였다. 형평원칙에서는 4년대졸이상이 조세정책을, 2년대졸이하는 주택정책과 국민연금제도에서 형평원칙을 더 선호하였다.

3) 거주지에 따른 비교

다음의 〈표 23〉은 거주지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결과이다. 매개변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거주지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기회균등’, ‘능력노력성공’이 거주지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서울거주자가 사회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23〉 거주지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구 분		거주지 별	평균값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부와 소득 분배의 공정성	전체	서울	2.398	0.641	1.494	0.225
		수도권 및 광역도시	2.413	0.561		
		기타도시 및 농어촌	2.311	0.552		
	경제 공정 배분	서울	2.290	0.792	1.021	0.361
		수도권 및 광역도시	2.261	0.724		
		기타도시 및 농어촌	2.192	0.634		
	개인 성공 좌우	서울	2.503	0.828	1.042	0.353
		수도권 및 광역도시	2.556	0.833		
		기타도시 및 농어촌	2.429	0.796		
기회 균등	전체	서울	2.834	0.811	2.621	0.073*
		수도권 및 광역도시	2.843	0.746		
		기타도시 및 농어촌	2.679	0.702		
	능력 노력 성공	서울	2.915	1.028	2.508	0.082*
		수도권 및 광역도시	2.860	0.932		
		기타도시 및 농어촌	2.712	0.944		
	제도 정책 성공	서울	2.749	0.862	1.963	0.141
		수도권 및 광역도시	2.826	0.853		
		기타도시 및 농어촌	2.647	0.810		
불평등 수용 정도	개인 실패 노력	서울	3.230	0.932	1.642	0.194
		수도권 및 광역도시	3.333	0.950		
		기타도시 및 농어촌	3.160	0.898		

* p<.1, ** p<.05, ***<.01

ANOVA 사후검정 결과

구분			평균차 (A-B)	표준 오차	유의 확률
변수명	집단 (A)	집단 (B)			
기회균등 전체	서울	기타도시 및 농어촌	0.154	0.071	0.092
능력노력성공	서울	기타도시 및 농어촌	0.203	0.09	0.076

〈표 24〉는 평등원칙 선호에 대한 거주지에 따른 평균값 차이를 비교한 결과, '복지혜택확대'가 거주지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결과, 수도권 및 광역도시 거주자와 기타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의 인식도

차이가 나타났다.

〈표 24〉 거주지에 따른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도

문 항	거주지 별	평균값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전체	서울	3.604	0.574	1.169	0.311
	수도권 및 광역도시	3.559	0.621		
	기타도시 및 농어촌	3.653	0.536		
조세정책	서울	3.700	0.942	0.744	0.476
	수도권 및 광역도시	3.615	0.956		
	기타도시 및 농어촌	3.718	0.856		
사회 보장정책	서울	3.841	0.794	0.545	0.58
	수도권 및 광역도시	3.779	0.828		
	기타도시 및 농어촌	3.788	0.842		
의료 보험제도	서울	3.998	0.742	1.495	0.225
	수도권 및 광역도시	3.923	0.781		
	기타도시 및 농어촌	4.058	0.721		
주택 정책	서울	3.738	0.773	0.447	0.64
	수도권 및 광역도시	3.713	0.775		
	기타도시 및 농어촌	3.788	0.709		
복지 혜택확대	서울	3.532	1.015	2.727	0.066*
	수도권 및 광역도시	3.421	1.021		
	기타도시 및 농어촌	3.667	0.890		
국민 연금제도	서울	2.809	1.071	0.712	0.491
	수도권 및 광역도시	2.895	1.009		
	기타도시 및 농어촌	2.897	1.042		

* p〈.1, ** p〈.05, ***〈.01

ANOVA 사후검정 결과

구분			평균차 (A-B)	표준 오차	유의 확률
변수명	집단 (A)	집단 (B)			
복지혜택확대	수도권 및 광역도시	기타도시 및 농어촌	-0.245	0.105	0.06

〈표 26〉은 독립변수인 ‘형평’의 거주지에 따른 평균값 차이를 비교한 결과, ‘형평전체’, ‘조세정책’, ‘의료보험제도’, ‘주택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차이를 보인 변수들 중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한 변수들은 서울거주자와 수도권 및 광역도시거주자 간 차이가 나타났고,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서울과 기타도시 및 농어촌 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 25〉 거주지에 따른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도

문 항	거주지 별	평균값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전체	서울	3.397	0.495	3.816	0.022**
	수도권 및 광역도시	3.292	0.533		
	기타도시 및 농어촌	3.315	0.489		
조세정책	서울	3.936	0.707	3.1	0.046**
	수도권 및 광역도시	3.798	0.779		
	기타도시 및 농어촌	3.827	0.772		
사회 보장정책	서울	2.817	0.889	1.595	0.204
	수도권 및 광역도시	2.688	0.842		
	기타도시 및 농어촌	2.801	0.946		
의료 보험제도	서울	3.224	0.962	3.98	0.019**
	수도권 및 광역도시	3.124	1.002		
	기타도시 및 농어촌	2.974	1.003		
주택 정책	서울	3.877	0.900	2.957	0.053**
	수도권 및 광역도시	3.722	0.832		
	기타도시 및 농어촌	3.744	0.841		
복지 혜택확대	서울	2.779	1.004	0.634	0.531
	수도권 및 광역도시	2.775	1.011		
	기타도시 및 농어촌	2.878	1.031		
국민 연금제도	서울	3.749	0.783	1.523	0.219
	수도권 및 광역도시	3.641	0.855		
	기타도시 및 농어촌	3.667	0.890		

* p<.1, ** p<.05, ***<.01

ANOVA 사후검정 결과

구분			평균차 (A-B)	표준 오차	유의 확률
변수명	집단 (A)	집단 (B)			
형평선호전체	서울	수도권 및 광역도시	0.104	0.041	0.036
조세정책	서울	수도권 및 광역도시	0.137	0.06	0.072
의료보험제도	서울	기타도시 및 농어촌	0.249	0.089	0.017
주택정책	서울	수도권 및 광역도시	0.154	0.072	0.096

종속변수인 ‘제도평가’에 대한 거주지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제도평가전체’, ‘주택정책’, ‘국민연금제도’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제도평가’ 전체‘는 수도권 및 광역도시 거주자와 기타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간의 인식도 차이를 보였다. ‘주택정책’의 경우, 서울거주자와 수도권 및 광역도시 간, 수도권 및 광역도시와 기타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 간 차이를 보였으며,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및 광역도시 거주자가 각각 기타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와의 인식도 차이를 보였다.

〈표 26〉 거주지에 따른 분배제도 공정성평가

	거주지 별	평균값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전체	서울	2.682	0.596	2.918	0.055*
	수도권 및 광역도시	2.745	0.557		
	기타도시 및 농어촌	2.597	0.544		
소득 격차부문	서울	2.364	0.877	1.132	0.323
	수도권 및 광역도시	2.462	0.927		
	기타도시 및 농어촌	2.449	0.875		
사회 보장정책	서울	2.688	0.838	2.296	0.101
	수도권 및 광역도시	2.736	0.775		
	기타도시 및 농어촌	2.558	0.747		
의료 보험제도	서울	3.164	0.837	1.651	0.192
	수도권 및 광역도시	3.158	0.802		
	기타도시 및 농어촌	3.032	0.722		
주택 정책	서울	2.529	0.818	5.219	0.055*
	수도권 및 광역도시	2.727	0.801		
	기타도시 및 농어촌	2.513	0.667		
국민 연금제도	서울	2.662	0.836	4.684	0.009***
	수도권 및 광역도시	2.646	0.765		
	기타도시 및 농어촌	2.436	0.836		

* p<.1, ** p<.05, ***<.01

ANOVA 사후검정 결과

구분			평균차 (A-B)	표준오차	유의확률
변수명	집단 (A)	집단 (B)			
제도평가 전체	수도권 및 광역도시	기타도시 및 농어촌	0.147	0.061	0.048
주택정책	서울	수도권 및 광역도시	-0.198	0.065	0.007
	수도권 및 광역도시	기타도시 및 농어촌	0.214	0.083	0.031
국민연금제도	서울	기타도시 및 농어촌	0.226	0.075	0.008
	수도권 및 광역도시	기타도시 및 농어촌	0.21	0.086	0.047

4) 연령에 따른 비교

매개변수인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연령에 따른 평균값은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를 나타냈고 사후검정 결과, 노년층이 청년층과 중년층과 각각 인식도 차이를 보였으며, 전부 노년층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27〉은 연령에 따른 불공정에 대한 인식 결과이다.

〈표 27〉 연령에 따른 불공정에 대한 인식

구 분		연령 별	평균값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부와 소득분배의 공정성	전체	청년층	2.327	0.568	25.316	0.000***
		중년층	2.367	0.606		
		노년층	2.941	0.571		
	경제 공정배분	청년층	2.172	0.721	22.019	0.000***
		중년층	2.276	0.706		
		노년층	2.882	0.887		
	개인 성공좌우	청년층	2.475	0.767	10.384	0.000***
		중년층	2.457	0.847		
		노년층	3.000	0.917		
기회균등	전체	청년층	2.742	0.730	26.641	0.000***
		중년층	2.775	0.772		
		노년층	3.549	0.808		
	능력 노력성공	청년층	2.818	0.962	20.662	0.000***
		중년층	2.798	0.974		
		노년층	3.706	0.965		
	제도 정책성공	청년층	2.665	0.819	17.321	0.000***
		중년층	2.750	0.843		
		노년층	3.392	0.896		
불평등의 수용정도	개인 실패노력	청년층	3.219	0.897	10.371	0.000***
		중년층	3.186	0.944		
		노년층	3.804	0.917		

* p〈.1, ** p〈.05, ***〈.01

ANOVA 사후검정 결과

구분			평균차 (A-B)	표준오차	유의확률
변수명	집단 (A)	집단 (B)			
부와소득분배의 공정성 전체	청년층	노년층	-0.614	0.087	0.000
	중년층	노년층	-0.574	0.087	0.000
경제공정배분	청년층	노년층	-0.710	0.107	0.000
	중년층	노년층	-0.606	0.108	0.000
개인성공좌우	청년층	노년층	-0.525	0.12	0.000
	중년층	노년층	-0.542	0.121	0.000
기회균등 전체	청년층	노년층	-0.806	0.112	0.000
	중년층	노년층	-0.773	0.112	0.000
능력노력성공	청년층	노년층	-0.887	0.143	0.000
	중년층	노년층	-0.907	0.144	0.000
제도정책성공	청년층	노년층	-0.727	0.123	0.000
	중년층	노년층	-0.642	0.124	0.000
개인실패노력	청년층	노년층	-0.585	0.136	0.000
	중년층	노년층	-0.618	0.137	0.000

독립변수인 '평등'에 대한 연령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소득격차부문', '의료보험제도', '복지혜택확대'의 평균값이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의료보험제도'는 청년층과 중년층 간의 차이가 있었고, 청년층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복지혜택확대'의 경우, 중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노년층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격차부문'의 경우 집단-내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8〉은 연령에 따른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도이다.

〈표 28〉 연령에 따른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도

	연령별	평균값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전체	청년층	3.627	0.557	1.39	0.25
	중년층	3.564	0.607		
	노년층	3.653	0.556		
소득격차부문	청년층	3.75	0.868	2.377	0.093*
	중년층	3.615	0.969		
	노년층	3.588	1.134		
사회보장정책	청년층	3.817	0.789	0.009	0.991
	중년층	3.812	0.834		
	노년층	3.804	0.872		
의료보험제도	청년층	4.046	0.721	3.227	0.04**
	중년층	3.92	0.794		
	노년층	4.078	0.523		
주택정책	청년층	3.776	0.775	1.32	0.268
	중년층	3.695	0.751		
	노년층	3.804	0.722		
복지혜택확대	청년층	3.545	0.973	2.877	0.057*
	중년층	3.473	1.048		
	노년층	3.824	0.740		
국민연금제도	청년층	2.827	1.002	0.211	0.81
	중년층	2.856	1.094		
	노년층	2.920	1.158		

* p〈.1, ** p〈.05, ***〈.01

ANOVA 사후검정 결과

구분			평균차 (A-B)	표준오차	유의확률
변수명	집단 (A)	집단 (B)			
의료보험제도	청년층	중년층	0.125	0.052	0.05
복지혜택확대	중년층	노년층	-0.35	0.148	0.056

다음의 〈표 29〉에서 독립변수 '형평'에 대한 연령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측정변수 '복지혜택확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연령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를 나타냈다.

〈표 29〉 연령에 따른 형평원칙에 대한 선호도

	연령별	평균값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전체	청년층	3.333	0.482	2.899	0.056*
	중년층	3.36	0.531		
	노년층	3.513	0.456		
소득격차부문	청년층	3.933	0.700	3.199	0.041**
	중년층	3.812	0.775		
	노년층	3.980	0.761		
사회보장정책	청년층	2.738	0.879	7.249	0.001***
	중년층	2.769	0.876		
	노년층	3.235	0.991		
의료보험제도	청년층	3.069	0.991	3.475	0.031**
	중년층	3.218	0.980		
	노년층	3.353	0.868		
주택정책	청년층	3.767	0.892	2.54	0.079*
	중년층	3.841	0.857		
	노년층	4.039	0.720		
복지혜택확대	청년층	2.836	0.988	0.869	0.42
	중년층	2.761	1.024		
	노년층	2.686	1.029		
국민연금제도	청년층	3.654	0.782	2.483	0.084*
	중년층	3.747	0.863		
	노년층	3.880	0.824		

* p<.1, ** p<.05, ***<.01

ANOVA 사후검정 결과

구분			평균차 (A-B)	표준오차	유의확률
변수명	집단 (A)	집단 (B)			
형평 전체	청년층	노년층	-0.18	0.075	0.05
소득격차부문	청년층	중년층	0.121	0.051	0.06
사회보장정책	청년층	노년층	-0.496	0.131	0.000
	중년층	노년층	-0.466	0.132	0.001
의료보험제도	청년층	중년층	-0.148	0.069	0.094

사후검정 결과, ‘형평’의 경우 청년층과 노년층 간 차이가 있었고, ‘소득격차부문’에서는 청년층과 중년층간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보장정책’의 경우, 노년층이 각각 청년층, 중년층과 차이가 있었으며, ‘의료보험제도’는 청년층과 중년층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모두 청년층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중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에서는 중년층의 인식도가 낮았다.

〈표 30〉 연령에 따른 분배제도 공정성 평가

	연령별	평균값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전체	청년층	2.638	0.535	15.562	0.000***
	중년층	2.665	0.578		
	노년층	3.108	0.709		
소득격차부문	청년층	2.345	0.848	9.169	0.000***
	중년층	2.395	0.911		
	노년층	2.902	0.900		
사회보장정책	청년층	2.623	0.773	12.832	0.000***
	중년층	2.658	0.797		
	노년층	3.216	0.945		
의료보험제도	청년층	3.162	0.798	3.620	0.027**
	중년층	3.074	0.815		
	노년층	3.380	0.805		
주택정책	청년층	2.520	0.779	9.278	0.000***
	중년층	2.568	0.783		
	노년층	3.020	0.836		
국민연금제도	청년층	2.540	0.778	12.255	0.000***
	중년층	2.619	0.818		
	노년층	3.140	1.030		

* $p<.1$, ** $p<.05$, *** $<.01$

ANOVA 사후검정 결과

구분			평균차 (A-B)	표준오차	유의확률
변수명	집단 (A)	집단 (B)			
제도평가 전체	청년층	노년층	-0.469	0.084	0.000
소득격차부문	청년층	노년층	-0.557	0.13	0.000
	중년층	노년층	-0.506	0.131	0.000
사회보장정책	청년층	노년층	-0.593	0.117	0.000
	중년층	노년층	-0.557	0.18	0.000
주택정책	청년층	노년층	-0.499	0.116	0.000
	중년층	노년층	-0.451	0.117	0.000
의료보험제도	중년층	노년층	-0.305	0.121	0.036
국민연금제도	청년층	노년층	-0.599	0.121	0.000
	중년층	노년층	-0.521	0.122	0.000

종속변수 '분배제도 공정성평가'에 대한 연령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종속변수 '제도평가'와 모든 측정변수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제도평가'는 청년층과 노년층 간 차이가 있었고,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중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소득격차부문', '사회보장정책', '주택정책', '국민연금제도'는 노년층이 각각 청년층, 중년층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모두 노년층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 4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1)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분배정의 선호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앞서, 설문조사 항목들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중 베리맥스 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 적재값은 0.5 이상인 값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요인의 표본 적정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Kaiser-Meyer- Olkin(KMO) and Bartlett 테스트 결과를 적용하였다.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인 값들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2개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공통성〉

변수명	공통성	변수명	공통성
최저소득보장	.571	지불비례주택	.448
소득격차당위	.556	연금실적비례	.432
최저생활보장	.620	조세제도공정	.479
생활개인책임	.344	사회보장공정	.630
국가의료보장	.580	의료보험공정	.362
지불비례의료	.349	주택정책공정	.525
국가주거보장	.543	국민연금공정	.516

추출된 요인 군 별로 Cronbach's Alpha(α)값을 이용하여 측정문항의 신뢰

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Cronbach's Alpha(α)계수가 요인군 1은 0.745, 요인군 2는 0.756, 요인군 3는 0.582로 나타났다.

〈표 31〉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성분			
	1	2	3	Cronbach α
사회보장공정	.790	-.044	.064	.745
주택정책공정	.719	-.078	.046	
국민연금공정	.716	-.016	.061	
조세제도공정	.691	-.011	.020	
의료보험공정	.557	.138	.180	
최저생활보장	.045	.786	-.012	.756
최저소득보장	.057	.753	.033	
국가의료보장	-.080	.738	.169	
국가주거보장	-.053	.734	-.038	
소득격차당위	-.033	.253	.701	.582
지불비례주택	.118	.050	.657	
연금실적비례	-.015	.063	.654	
지불비례의료	.155	-.100	.561	
생활개인책임	.324	-.252	.419	
고유값(eigenvalue)	2.865	2.518	1.571	
기여율(%)	20.466	17.985	11.223	
누적기여율(%)	20.466	38.451	49.674	

주 : KMO(p값) = .870(.000)

〈요인분석 결과 제거된 측정변수〉

잠재변수	변수명	설문문항
평등원칙	복지정책평등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한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연금최저보장	국가는 보험료 납부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최저한의 연금을 평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형평원칙	복지혜택비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요인분석 결과 당초 연구설계와 달리 평등에 대한 선호도 가운데 복지정책평등 의 측정변수와 국민연금제도의 측정변수가 제거되었다. 또한 형평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복지혜택비례의 측정변수가 제거되었다.

2) 매개변수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독립변수 형평에 대한 인식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는 부와 소득분배공정성, 기회균등, 불평등의 수용정도 등 3가지이기 때문에 3개의 회귀모형이 있고,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미치는 회귀모형까지 총 4개의 회귀모형이 있다. 여기에 집단 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조사대상자, 일반인, 공무원, 정치인 총 4개의 집단 별 회귀모형이 가정된다. 또한, 성별 · 연령 · 최종학력 · 주관적 계층인식 · 월 평균 소득 · 거주지 · 주거형태 · 생활수준만족도 등 총 8가지 유형의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다음은 각 통제변수별 항목과 처리결과이다. 총 11개의 변수가 통제되었다.

〈통제변수 처리결과〉

통제변수		처리방법	기준 변수	통제 변수 개수
항목	설문문항			
성별	남자, 여자	-	남자	1개
연령	개방형	청년층(20 · 30대) 중년층(40 · 50대) 노년층(60대 이상)으로 구분	청년층	2개
최종학력	초등학교 이하, 초졸, 중졸, 고졸, 2년대졸, 4년대졸, 대학원이상	2년대졸 이하와 4년대졸이상으로 구분	2년대졸 이하	1개
주관적 계층인식	5점 척도	-	-	1개
월평균 소득	개방형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이상으로 구분	200만원 미만	2개
거주지	서울, 수도권, 광역도시, 기타 도시, 농어촌	서울, 수도권 · 광역도시, 기타도시 · 농어촌으로 구분	서울	2개
주거 형태	자택, 전세, 월세, 전월세지만 다른 곳에 자택 소유	주택 소유, 무소유로 구분	주택 소유	1개
생활수준 만족도	5점 척도	-	-	1개
총계				11개

가) 전체 조사대상자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이 매개변수 부와 소득분배공정성, 기회균등,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32〉 매개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전체)

	형평	평등	성별	중년층	노년층	학력	주관계층
매개1	.232	−.004	−.011	.040	.159	−.077	.088
매개2	.256	.005	−.124	−.019	.230	−.133	.069
매개3	.319	−.043	−.130	−.044	.134	−.060	−.039
형평	1.000	.040	−.039	.001	.119	.029	.045
평등		1.000	−.062	−.058	−.009	.135	−.028
성별			1.000	−.066	−.055	−.091	.021
중년층				1.000	−.226	−.108	.017
노년층					1.000	−.210	−.096
학력						1.000	.234
주관계층							1.000

	2백~4백만원	4백만원 이상	수도권	기타 도시	주택 소유	생활 만족
매개1	−.009	.080	.008	.021	−.056	.128
매개2	−.042	.057	.021	−.097	−.051	.169
매개3	−.059	.055	.047	−.035	−.062	.028
형평	−.005	−.012	−.108	−.032	−.125	.125
평등	−.020	.043	−.028	.002	.079	.024
성별	.053	−.064	.022	.072	−.062	.000
중년층	−.035	.118	.064	−.011	−.112	−.021
노년층	−.005	−.022	−.119	−.102	−.086	−.005
학력	−.001	.018	.117	−.186	.056	.096
주관계층	−.031	.003	.009	−.074	−.193	.463
2백~4백	1.000	−.467	.014	.057	−.056	−.034
4백만원~		1.000	.092	.054	.002	.024
수도권			1.000	−.258	−.053	.004
기타도시				1.000	−.124	−.069
주택소유					1.000	−.141
생활만족						1.000

* 매개1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매개2 : 기회균등,
매개3 : 불평등의 수용정도

우선 회귀분석의 선행단계로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양측검증(two-tailed)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상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살펴보았다.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해서는 평등, 학력, 평균소득2(400만원이상), 주택소유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계층인식, 나이2(노년층), 생활수준만족도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회균등에 대해서는 성별, 학력, 거주지2(기타도시 · 농어촌), 주택소유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형평, 노년층, 주관적 계층인식, 평균소득2(400만원이상), 생활수준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평등, 나이1(청년층), 학력, 주관적 계층인식, 거주지2(기타도시 · 농어촌)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평균소득2(400만원이상), 거주지1(서울)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기회균등,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대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회귀분석모형의 적합도 등의 모델 요약은 〈표 33〉와 같다.

〈표 33〉 매개변수 회귀모형 요약(전체)

변수	R	R^2	수정된 R^2	F값	유의도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327	.107	.091	6.755	.000
기회균등	.410	.168	.154	11.373	.000
불평등의 수용정도	.386	.149	.134	9.862	.000

매개변수들에 대한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다중 회귀분석결과,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의 경우 $R^2(adjR^2)$값은 0.107(0.091)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0.7%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균등의 경우 $R^2(adjR^2)$값은 0.168(0.154)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6.8%의 모델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의 수용정도의 경우 $R^2(adjR^2)$값은 0.149(0.134)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4.9%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회귀분석 결과(전체 대상자)〉[8)]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895	.311		2.875	.004
형평	.353	.059	.216	5.989	.000***
평등	−.002	.049	−.001	−.041	.967
여자	.004	.060	.002	.069	.945
(남자)					
중년층	.101	.064	.059	1.589	.113
노년층	.558	.136	.159	4.116	.000***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125	.069	−.070	−1.818	.069*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097	.048	.084	2.033	.042**
200~400만원	.066	.067	.039	.978	.328
400만원이상	.192	.088	.088	2.186	.029**
(200만 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120	.074	.061	1.616	.107
기타도시·농어촌	.126	.086	.056	1.464	.144
(서울)					
주택 소유	.060	.065	.034	.919	.358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71	.036	.079	1.974	.049**

매개변수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35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하의 집단이 대졸 이상에 비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았다. 상대적으로 저학력

8) 이후 본 논문에서 회귀분석 결과는 표 번호 부여하지 않음.

자 집단이 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계층인식에서는 스스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이 200만 원 이하 저소득 집단에 비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 만족도에서도 생활수준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부와 소득분배에 대한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기회균등 회귀분석 결과(전체 조사대상자)〉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1.311	.274		4.780	.000
형평	.338	.052	.225	6.472	.000***
평등	.009	.043	.007	.205	.837
여자	-.180	.054	-.115	-3.350	.001***
(남자)					
중년층	-.018	.056	-.011	-.316	.752
노년층	.546	.120	.169	4.536	.000***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268	.061	-.165	-4.399	.000***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058	.042	.054	1.367	.172
200~400만원	.000	.060	.000	-.008	.994
400만원이상	.105	.078	.052	1.341	.180
(200만 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118	.066	.065	1.786	.074*
기타도시·농어촌	-.136	.076	-.066	-1.783	.075*
(서울)					
주택 소유	.021	.058	.013	.357	.721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106	.032	.128	3.322	.001***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매개변수 기회균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338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았다. 여

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면서,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이 정착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들의 체감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기회균등 인식이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에 비해 전문대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학연에 의한 사회진출 제약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서울과 비교하여 수도권·광역도시는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도시·농어촌 거주자들은 기회균등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지역 불균형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생활수준 만족도에 대해서는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기회균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불평등의 수용정도 회귀분석 결과(전체 조사대상자)〉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1.939	.331		5.864	.000
형평	.571	.063	.319	9.079	.000***
평등	−.087	.052	−.058	−1.663	.097*
여자	−.236	.065	−.127	−3.657	.000***
(남자)					
중·장년층	−.115	.068	−.062	−1.695	.090*
노년층	.251	.145	.065	1.729	.084*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132	.073	−.068	−1.797	.073*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053	.051	−.042	−1.035	.301
200~400만원	−.079	.072	−.043	−1.092	.275
400만원이상	.080	.094	.034	.855	.393
(200만 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212	.079	.098	2.667	.008***
기타도시·농어촌	−.008	.092	−.003	−.091	.927
(서울)					
주택 소유	−.055	.070	−.029	−.791	.429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07	.039	.007	.181	.856

매개변수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57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반면, 평등은 -0.08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형평에 비해 크기는 작았지만, 부(-)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불평등의 수용정도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회균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인지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양성평등채용 등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수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층은 불평등의 수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서울지역에 비해 수도권·광역도시의 불평등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 공무원

공무원 집단의 평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이 매개변수 부와 소득분배공정성, 기회균등,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의 선행단계로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양측검증(two-tailed)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34〉 매개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공무원)[9]

	형평	평등	성별	중년층	학력	주관계층
매개1	.208	-.070	-.010	.120	.018	.157
매개2	.256	.007	-.069	.109	-.074	.128
매개3	.368	-.126	-.059	.038	-.049	-.049
형평	1.000	-.054	.024	.079	-.013	.081
평등		1.000	-.119	-.031	.168	.020
성별			1.000	-.149	.024	.031
중년층				1.000	-.202	-.004
학력					1.000	.206
주관계층						1.000

9) 공무원의 경우 정년으로 인해 60대 이상 노년층의 표본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

	2백~4백만원	4백만원 이상	수도권	기타 도시	주택 소유	생활 만족
매개1	.005	.109	.070	.017	-.051	.185
매개2	-.027	.087	-.019	.019	-.009	.210
매개3	-.041	.047	.044	.055	-.022	.017
형평	-.004	-.010	-.092	.071	-.162	.100
평등	-.057	.060	-.034	-.071	.139	.039
성별	.087	-.161	.092	.058	-.080	-.044
중년층	-.037	.200	.033	-.017	-.268	.005
학력	-.026	.115	.149	-.233	.178	.082
주관계층	.016	.113	.028	-.055	-.124	.414
2백~4백	1.000	-.509	.001	.105	-.087	-.030
4백만원~		1.000	.114	-.058	-.051	.083
수도권			1.000	-.282	-.094	.014
기타도시				1.000	-.218	-.071
주택소유					1.000	-.023
생활만족						1.000

* 매개1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매개2 : 기회균등,
매개3 : 불평등의 수용정도

상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살펴보았다.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해서는 평등만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밖의 형평, 나이1(중·장년층), 주관적 계층인식, 평균소득2(400만원이상), 거주지(수도권·광역도시), 생활수준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회균등에 대해서는 성별, 학력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형평, 나이1(중·장년층), 주관적 계층인식, 평균소득2(400만원이상), 생활수준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평등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형평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기회균등,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대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회귀분석모형의 적합도 등의 모델 요약은 다음의 〈표 35〉 와 같다.

〈표 35〉 매개변수 회귀모형 요약(공무원)

변수	R	R^2	수정된 R^2	F값	유의도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330	.109	.078	3.488	.000
기회균등	.359	.129	.098	4.193	.000
불평등의 수용정도	.420	.176	.147	6.089	.000

매개변수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다중 회귀분석결과,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의 경우 $R^2(adjR^2)$값은 0.109(0.078)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0.9%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균등의 경우 $R^2(adjR^2)$값은 0.129(0.176)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2.9%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의 수용정도의 경우 $R^2(adjR^2)$값은 0.176(0.147)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7.6%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회귀분석 결과(공무원)〉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942	.472		1.997	.047
형평	.330	.090	.192	3.651	.000***
평등	−.091	.071	−.068	−1.293	.197
여자	.000	.089	.000	−.001	.999
(남자)					
중·장년층	.165	.094	.099	1.759	.079*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006	.126	.003	.044	.965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103	.072	.084	1.443	.150
200~400만원	.098	.101	.059	.966	.335
400만원이상	.209	.131	.101	1.598	.111
(200만 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163	.105	.086	1.553	.121
기타도시·농어촌	.111	.122	.051	.908	.364
(서울)					
주택 소유	.099	.097	.059	1.019	.309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119	.052	.130	2.305	.022**

매개변수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33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중·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성별, 학력, 주관적 계층인식, 평균소득 거주지, 주택수유 등의 통제변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회균등 회귀분석 결과(공무원)〉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822	.407		2.019	.044
형평	.369	.079	.243	4.695	.000***
평등	.010	.062	.009	.168	.867
여자	−.067	.078	−.045	−.861	.390
(남자)					
중·장년층	.110	.082	.074	1.333	.183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204	.111	−.103	−1.844	.066*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071	.063	.065	1.136	.257
200~400만원	.035	.089	.024	.394	.694
400만원이상	.134	.115	.073	1.166	.244
(200만 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039	.092	.023	.426	.671
기타도시·농어촌	.047	.107	.025	.437	.662
(서울)					
주택 소유	.129	.086	.085	1.504	.134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132	.045	.163	2.910	.004***

공무원들의 매개변수 기회균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36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학력에서 전문대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 만족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불평등의 수용정도 회귀분석 결과 (공무원)〉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1.616	.471		3.430	.001
형평	.698	.091	.386	7.669	.000***
평등	-.169	.071	-.119	-2.361	.019**
여자	-.142	.090	-.081	-1.574	.116
(남자)					
중·장년층	-.009	.095	-.005	-.098	.922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065	.128	-.028	-.506	.613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093	.073	-.072	-1.280	.201
200~400만원	-.037	.103	-.021	-.358	.720
400만원이상	.088	.133	.040	.662	.509
(200만 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214	.107	.107	2.003	.046**
기타도시·농어촌	.143	.124	.063	1.148	.252
(서울)					
주택 소유	.122	.099	.068	1.236	.217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12	.053	.012	.223	.823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698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반면, 평등은 -0.16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은 형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크기는 작았지만, 부(-)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다른 변수들은 모두 기각되고, 오직 수도권·광역도시의 통제변수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지역에 비해 수도권·광역도시의 공무원들의 불평등의 수용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일반인

일반인의 평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이 매개변수 부와 소득분배공정성, 기회균등,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서 전체 조사대상자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상관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6〉 매개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일반인)

	형평	평등	성별	중년층	노년층	학력	주관계층
매개1	.262	.054	-.017	-.025	.214	-.131	.042
매개2	.269	.000	-.181	-.116	.301	-.158	.035
매개3	.286	.027	-.191	-.115	.183	-.075	-.033
형평	1.000	.129	-.072	-.095	.202	-.014	-.004
평등		1.000	-.016	-.074	-.028	.159	-.059
성별			1.000	.037	-.112	-.123	.033
중년층				1.000	-.282	-.151	.006
노년층					1.000	-.166	-.093
학력						1.000	.210
주관계층							1.000

	2백~4백 만원	4백만원 이상	수도권	기타 도시	주택 소유	생활 만족
매개1	-.020	.056	-.048	.027	-.058	.083
매개2	-.052	.034	.061	-.196	-.082	.142
매개3	-.075	.061	.051	-.114	-.098	.037
형평	-.013	-.023	-.135	-.126	-.110	.134
평등	.018	.029	-.018	.076	.026	.014
성별	.028	.038	-.037	.091	-.035	.049
중년층	-.043	.028	.083	-.013	.020	-.060
노년층	.004	-.019	-.157	-.140	-.102	.013
학력	-.004	-.078	.080	-.197	-.064	.080
주관계층	-.076	-.100	-.017	-.097	-.268	.497
2백~4백	1.000	-.431	.023	.010	-.030	-.042
4백만원~		1.000	.067	.166	.050	-.036
수도권			1.000	-.237	-.019	-.009
기타도시				1.000	-.035	-.071
주택소유					1.000	-.255
생활만족						1.000

* 매개1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매개2 : 기회균등, 매개3 : 불평등의 수용정도

일반인 집단의 상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살펴보았다.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해서는 학력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형평, 나이2(노년층), 생활수준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회균등에 대해서는 성별, 나이1(중 · 장년층), 학력, 거주지2(기타도시 · 농어촌), 주택소유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형평, 나이2(노년층), 생활수준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성별, 나이1(중 · 장년층), 학력, 평균소득1(200 ~ 400 만원 미만), 거주지2(기타도시 · 농어촌), 주택소유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형평, 나이2(노년층)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일반인의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기회균등,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대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회귀분석모형의 적합도 등의 모델 요약은 다음의 〈표 37〉과 같다.

〈표 37〉 매개변수 회귀모형 요약 (일반인)

변 수	R	R^2	수정된 R^2	F값	유의도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352	.124	.094	4.101	.000
기회균등	.482	.232	.206	8.757	.000
불평등의 수용정도	.403	.163	.134	5.634	.000

매개변수들에 대한 일반인의 다중 회귀분석결과,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의 경우 $R^2(adjR^2)$값은 0.124(0.094)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2.4%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균등의 경우 $R^2(adjR^2)$값은 0.232(0.206)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23.2%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의 수용정도의 경우 $R^2(adjR^2)$값은 0.163(0.134)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6.3%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회귀분석 결과 (일반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 값	표준오차			
(상수)	.857	.426		2.009	.045
형평	.369	.082	.232	4.506	.000***
평등	.066	.071	.047	.934	.351
여자	−.007	.086	−.004	−.085	.932
(남자)					
중·장년층	.061	.092	.034	.662	.508
노년층	.488	.146	.184	3.340	.001***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178	.092	−.104	−1.935	.054*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098	.066	.087	1.482	.139
200~400만원	.024	.093	.014	.257	.797
400만원이상	.128	.126	.056	1.017	.310
(200만 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065	.107	.032	.612	.541
기타도시·농어촌	.155	.126	.067	1.230	.219
(서울)					
주택 소유	.014	.093	.008	.155	.877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23	.051	.026	.457	.648

일반인의 매개변수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36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하의 집단이 대졸 이상에 비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았다. 이는 앞서 공무원 집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기회균등 회귀분석 결과 (일반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1.763	.377		4.675	.000
형평	.278	.073	.185	3.840	.000***
평등	.028	.063	.021	.440	.661
여자	-.262	.076	-.160	-3.453	.001***
(남자)					
중·장년층	-.129	.081	-.077	-1.594	.112
노년층	.453	.129	.181	3.511	.001***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343	.082	-.212	-4.204	.000***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039	.058	.036	.662	.509
200~400만원	-.040	.082	-.025	-.485	.628
400만원이상	.105	.112	.049	.939	.348
(200만 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181	.095	.093	1.909	.057*
기타도시·농어촌	-.335	.111	-.154	-3.012	.003***
(서울)					
주택 소유	-.057	.082	-.034	-.699	.485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83	.045	.098	1.848	.065*

일반인들의 매개변수 기회균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278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공무원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결과인 성별인식 차이가 남자에 비해 여자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기회균등 인식이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에 비해 전문대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보다 40%높은 수치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거주지에 따라서 서울과 비교하여 수도권·광역도시는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도시·농어촌 거주자들은 기회균등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생활수준 만족도에 대해서는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기회균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불평등의 수용정도 회귀분석 결과(일반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2.181	.471		4.634	.000
형평	.430	.091	.239	4.756	.000***
평등	.024	.078	.015	.312	.755
여자	-.336	.095	-.171	-3.545	.000***
(남자)					
중·장년층	-.190	.101	-.095	-1.879	.061*
노년층	.184	.161	.061	1.140	.255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227	.102	-.118	-2.233	.026**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031	.073	-.024	-.420	.675
200~400만원	-.104	.103	-.054	-1.019	.309
400만원이상	.141	.139	.055	1.013	.312
(200만 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190	.118	.082	1.608	.109
기타도시·농어촌	-.208	.139	-.080	-1.503	.134
(서울)					
주택 소유	-.179	.102	-.089	-1.756	.080*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01	.056	-.001	-.009	.993

일반인의 매개변수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43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불평등의 수용정도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층은 불평등의 수용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전문대졸 이하 저학력자의 불평등의 수용정도가 낮았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 무소유 집단이 주택 소유 집단에 비해, 불평등의 수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정치인

정치인 집단의 평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이 매개변수 부와 소득분배공정성, 기회균등, 불평등의 합법화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의 선행단계로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양측검증(two-tailed)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상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살펴보았다.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해서는 평등만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밖의 형평, 나이1(중·장년층), 주관적 계층인식, 평균소득2(400만원이상), 거주지(수도권·광역도시), 생활수준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회균등에 대해서는 성별, 학력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형평, 나이1(중·장년층), 주관적 계층인식, 평균소득2(400만원 이상), 생활수준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불평등에 대한 합법화 수용정도는 평등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형평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38〉 매개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정치인)

	형평	평등	성별	중년층	학력	주관계층
매개1	.228	-.279	.228	-.010	-.015	-.055
매개2	.369	-.267	-.037	-.049	-.063	-.078
매개3	.424	-.153	-.042	-.126	-.141	-.227
형평	1.000	-.421	.075	-.179	-.020	.140
평등		1.000	-.155	.267	-.053	-.147
성별			1.000	-.180	-.176	.117
중년층				1.000	-.060	-.132
학력					1.000	.132
주관계층						1.000

	2백~4백 만원	4백만원 이상	수도권	주택소유	생활만족
매개1	-.015	.190	.151	-.132	.163
매개2	-.275	.090	-.037	.046	.136
매개3	-.087	-.034	.036	-.042	-.075
형평	-.066	-.028	-.159	-.158	.211
평등	.114	-.170	.142	.184	-.215
성별	.158	-.040	-.090	-.327	.098
나이1	.173	-.020	.071	.082	-.139
나이2	.	.	.	.	.
학력	-.111	.123	-.038	.087	.114
주관계층	-.161	.111	-.060	-.229	.454
2백~4백	1.000	-.492	.150	-.077	.012
4백만원~		1.000	.065	-.057	.073
수도권			1.000	-.209	.015
주택소유				1.000	-.162
생활만족					1.000

주 : 신뢰구간 0.1 이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음영처리함.

매개1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매개2 : 기회균등, 매개3 : 불평등의 수용정도

다음으로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기회균등, 불평등에 대한 합법화 수용정도에 대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회귀분석모형의 적합도 등의 모델 요약은 다음의 〈표 39〉 와 같다.

〈표 39〉 매개변수 회귀모형 요약(정치인)

변수	R	R^2	수정된 R^2	F값	유의도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496	.246	.114	1.869	.061
기회균등	.539	.290	.166	2.341	.017
불평등의 수용정도	.555	.308	.187	2.548	.010

매개변수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다중 회귀분석결과,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의 경우 $R^2(adjR^2)$값은 0.246(0.114)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24.6%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균등의 경우 $R^2(adjR^2)$값은 0.290(0.166)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29.0%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에 수용정도의 경우 $R^2(adjR^2)$값은 0.308(0.187)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30.8%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33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제도평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수도권·광역도시 거주자가 서울지역 거주자에 비해, 제도평가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회귀분석 결과(정치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2.318	1.493		1.552	.126
형평	.349	.235	.186	1.486	.142
평등	-.272	.183	-.192	-1.488	.142
여자	.512	.248	.256	2.066	.043
(남자)					
중·장년층	.232	.260	.106	.891	.376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097	.525	.021	.186	.853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238	.156	-.196	-1.525	.132
200~400만원	-.036	.250	-.020	-.145	.885
400만원 이상	.329	.268	.162	1.228	.224
(200만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435	.247	.210	1.760	.083
(서울)					
주택 소유	.066	.227	.037	.292	.771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145	.123	.150	1.179	.243

정치인들의 매개변수 기회균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50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 비해, 200~400만원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균등 회귀분석 결과(정치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2.322	1.243		1.867	.067
형평	.505	.195	.313	2.582	.012***
평등	-.192	.152	-.158	-1.264	.211
여자	.026	.206	.015	.125	.901
(남자)					
중·장년층	.163	.216	.086	.751	.456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325	.437	-.083	-.745	.459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237	.130	-.228	-1.824	.073*
200~400만원	-.541	.208	-.344	-2.597	.012**
400만원 이상	-.128	.223	-.073	-.573	.569
(200만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154	.206	.087	.750	.456
(서울)					
주택 소유	.148	.189	.095	.783	.436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151	.102	.183	1.482	.143

매개변수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96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다른 변수들은 모두 기각되고, 오직 주관적 계층인식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의 수용정도 회귀분석 결과(정치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1.851	1.601		1.156	.252
형평	.962	.252	.458	3.824	.000***
평등	-.008	.196	-.005	-.042	.966
여자	-.128	.266	-.057	-.481	.632
(남자)					
중·장년층	-.210	.279	-.085	-.752	.455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547	.562	-.106	-.972	.335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379	.167	-.280	-2.267	.027**
200~400만원	-.274	.268	-.133	-1.020	.312
400만원 이상	-.121	.287	-.053	-.422	.674
(200만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247	.265	.107	.933	.354
(서울)					
주택 소유	-.065	.243	-.032	-.269	.789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45	.132	-.041	-.339	.736

이상의 매개변수에 대한 집단별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하고,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의 〈표 40〉과 같다.

〈표 40〉 매개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합

변수		전체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	
		β값	유의수준	β값	유의수준	β값	유의수준	β값	유의수준
형평원칙	부와 소득 분배공정성	.353	.000***	.330	.000***	.369	.000***	.349.	142
	기회균등	.338	.000***	.369	.000***	.278	.000***	.505	.012***
	불평등의 수용정도	.571	.000***	.698	.000***	.430	.000***	.962	.000***
평등원칙	부외 소득 분배공정성	−.002	.967	−.091	.197	.066	.351	−.272	.142
	기회균등	.009	.837	.010	.867	.028	.661	−.192	.211
	불평등의 수용정도	−.087	.097*	−.169	.019**	.024	.755	−.008	.966

형평에 대한 인식은 전체 조사대상자, 공무원, 일반인 모든 집단에서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에 대한 인식은 불평등의 수용정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와 공무원 집단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 제도평가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가) 전체 조사대상자

다음으로 매개변수에 이어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을 하

였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이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매개변수와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학력, 주관적 계층인식, 소득 수준, 거주지, 주거 소유 여부, 생활수준 만족도는 통제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의 선행단계로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양측검증(two-tailed)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41〉 제도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전체)

	제도평가	형평	평등	중년층	노년층	나이2	학력
제도평가	1.000	.247	-.042	-.102	-.006	.197	-.078
형평		1.000	.044	-.037	-.001	.120	.027
평등			1.000	-.058	-.060	-.008	.129
성별				1.000	-.069	-.054	-.093
나이1					1.000	-.226	-.102
나이2						1.000	-.210
학력							1.000

	주관계층	2백~4백만원	4백만원 이상	수도권	기타 도시	주택 소유	생활 만족
제도평가	.141	-.032	.045	.056	-.084	-.068	.161
형평	.046	-.003	-.010	-.105	-.030	-.121	.124
평등	-.027	-.020	.044	-.026	.003	.081	.021
성별	.020	.053	-.063	.024	.073	-.060	-.005
중년층	.017	-.033	.118	.064	-.011	-.112	-.019
노년층	-.095	-.004	-.022	-.119	-.102	-.086	-.003
학력	.235	-.003	.018	.117	-.186	.056	.100
주관계층	1.000	-.029	.004	.011	-.072	-.190	.463
2백~4백		1.000	-.466	.015	.058	-.054	-.031
4백만원~			1.000	.092	.054	.002	.027
수도권				1.000	-.258	-.053	.008
기타도시					1.000	-.124	-.067
주택소유						1.000	-.136
생활만족							1.000

전체 조사대상자의 상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살펴보았다. 먼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는 통제변수 성별, 학력, 거주지2(기타도시 · 농어촌), 주택 소유 여부로 나타났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은 독립변수 형평에 대한 인식과 통제변수 나이2(노년층), 주관적 계층인식, 거주지1(수도권 · 광역도시), 생활수준 만족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회귀분석모형의 적합도 등의 모델 요약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2〉 제도평가의 회귀모형 요약(전체 조사대상자)

변수	R	R^2	수정된 R^2	F값	유의도
제도평가	.386	.149	.134	9.867	.000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다중 회귀분석결과, $R^2(adjR^2)$값은 0.149(0.134)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4.9%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24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제도평가를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제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하의 집단이 대졸 이상에 비해 제도평가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았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집단이 제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계층인식에서는 스스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제도평가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수도권 · 광역도시 거주자들이 서울 거주자에 비해 제도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 만족도에서도 생활수준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제도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

〈제도평가 회귀분석 결과(전체 조사대상자)〉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1.607	.206		7.819	.000
형평	.249	.039	.224	6.370	.000***
평등	-.038	.033	-.040	-1.155	.249
여자	-.111	.040	-.096	-2.768	.006***
(남자)					
중·장년층	.000	.042	.000	.005	.996
노년층	.393	.090	.164	4.355	.000***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136	.046	-.113	-2.989	.003***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106	.032	.134	3.339	.001***
200~400만원	-.001	.045	-.001	-.024	.981
400만원 이상	.056	.058	.038	.961	.337
(200만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134	.049	.099	2.713	.007***
기타도시·농어촌	-.052	.057	-.034	-.914	.361
(서울)					
주택 소유	.017	.043	.014	.391	.696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50	.024	.081	2.094	.037**

나) 공무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공무원의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을 하였다.

다음의 〈표 43〉은 공무원 집단의 제도평가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관분석결과이다.

〈표 43〉 제도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공무원)

	제도평가	형평	평등	성별	중년층	학력
제도평가	1.000	.257	-.030	-.049	.097	.033
형평		1.000	-.043	.028	.075	-.017
평등			1.000	-.116	-.033	.163
성별				1.000	-.149	.021
중년층					1.000	-.199
학력						1.000

	주관 계층	2백~4 백만원	4백만원 이상	수도권	기타 도시	주택 소유	생활 만족
제도평가	.249	-.029	.121	.118	-.037	-.071	.215
형평	.086	.000	-.005	-.086	.075	-.153	.099
평등	.025	-.054	.065	-.029	-.067	.146	.037
성별	.033	.087	-.158	.095	.060	-.075	-.046
중년층	-.006	-.037	.197	.030	-.019	-.273	.007
학력	.204	-.029	.115	.149	-.233	.178	.081
주관계층	1.000	.018	.114	.031	-.053	-.120	.414
2백~4백		1.000	-.506	.005	.108	-.083	-.031
4백만원~			1.000	.114	-.058	-.051	.085
수도권				1.000	-.282	-.094	.016
기타도시					1.000	-.218	-.070
주택소유						1.000	-.021
생활만족							1.000

공무원의 상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살펴보았다. 먼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는 주택 소유 여부에 하나로 나타났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은 독립변수 형평에 대한 인식과 통제변수 나이1(중 · 장년층), 주관적 계층인식, 평균소득2(400만원 이상), 거주지1(수도권 · 광역도시), 생활수준 만족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공무원

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회귀분석모형의 적합도 등의 모델 요약은 다음의 〈표 44〉와 같다.

〈표 44〉 제도평가의 회귀모형 요약(공무원)

변수	R	R^2	수정된 R^2	F값	유의도
제도평가	.402	.161	.132	5.482	.000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다중 회귀분석결과, 의 경우 $R^2(adjR^2)$값은 0.161(0.132)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6.1%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266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성별, 연령, 학력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제도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서는 수도권·광역도시 거주자들이 서울에 비해 제도평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는 공무원의 제도평가 회귀분석결과이다

〈제도평가 회귀분석 결과(공무원)〉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1.181	.288		4.093	.000
형평	.266	.056	.242	4.772	.000***
평등	-.028	.044	-.033	-.649	.517
여자	-.056	.055	-.053	-1.020	.308
(남자)					
중·장년층	.060	.058	.056	1.035	.301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032	.078	-.022	-.408	.683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143	.045	.182	3.213	.001***
200~400만원	.013	.063	.012	.212	.832
400만원 이상	.094	.081	.071	1.158	.248
(200만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163	.065	.134	2.494	.013**
기타도시·농어촌	.009	.076	.006	.115	.908
(서울)					
주택 소유	.032	.061	.029	.524	.601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64	.032	.110	2.003	.046**

다) 일반인

일반인의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을 하였다. 다음의 〈표 45〉는 일반인 집단의 제도평가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관분석결과이다.

〈표 45〉 제도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일반인)

	제도평가	형평	평등	성별	중년층	노년층	학력
제도평가	1.000	.247	-.055	-.150	-.085	.257	-.140
형평		1.000	.129	-.073	-.096	.203	-.013
평등			1.000	-.013	-.073	-.029	.156
성별				1.000	.033	-.112	-.123
나이1					1.000	-.280	-.147
나이2						1.000	-.166
학력							1.000

	주관계층	2백~4백만원	4백만원 이상	수도권	기타 도시	주택 소유	생활 만족
제도평가	.070	-.033	-.018	.005	-.124	-.064	.124
형평	-.004	-.012	-.023	-.134	-.126	-.109	.133
평등	-.059	.015	.028	-.020	.075	.024	.012
성별	.030	.028	.038	-.037	.091	-.035	.042
중년층	.005	-.038	.030	.086	-.011	.024	-.059
노년층	-.091	.004	-.019	-.157	-.140	-.102	.016
학력	.213	-.004	-.078	.080	-.197	-.064	.087
주관계층	1.000	-.072	-.099	-.016	-.095	-.266	.497
2백~4백		1.000	-.431	.023	.010	-.030	-.034
4백만원 ~			1.000	.067	.166	.050	-.032
수도권				1.000	-.237	-.019	-.005
기타도시					1.000	-.035	-.067
주택소유						1.000	-.248
생활만족							1.000

일반인의 상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살펴보았다. 먼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는 통제변수 성별, 나이1(중·장년층) 학력, 거주지2(기타도시·농어촌)로 나타났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은 독립변수 형평에 대한 인식과 통제변수 나이2(노년층), 주관적 계층인식, 생활수준 만족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일반인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회귀분석모형의 적합도 등의 모델 요약은 다음의 〈표 46〉과 같다.

〈표 46〉 제도평가의 회귀모형 요약(일반인)

변수	R	R^2	수정된 R^2	F값	유의도
제도평가	.405	.164	.135	5.674	.000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다중 회귀분석결과, $R^2(adjR^2)$값은 0.164(0.135)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16.4%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는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일반인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21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제도평가를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제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하의 집단이 대졸 이상에 비해 제도평가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았다.
그 외의 주관적 계층인식, 소득,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생활수준 만족도에 의한 통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도평가 회귀분석 결과(일반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2.013	.297		6.765	.000
형평	.219	.057	.192	3.820	.000***
평등	-.043	.049	-.042	-.868	.386
여자	-.165	.060	-.133	-2.754	.006***
(남자)					
중·장년층	-.058	.064	-.046	-.913	.362
노년층	.315	.102	.166	3.089	.002***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205	.064	-.168	-3.197	.002***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065	.046	.082	1.417	.157
200~400만원	-.032	.065	-.026	-.486	.627
400만원 이상	-.015	.088	-.009	-.168	.867
(200만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082	.075	.056	1.098	.273
기타도시·농어촌	-.111	.088	-.068	-1.271	.204
(서울)					
주택 소유	-.003	.065	-.003	-.054	.957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43	.036	.067	1.205	.229

라) 정치인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을 하였다. 다음의 〈표 47〉은 정치인 집단의 제도평가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관분석 결과이다.

정치인의 상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살펴보았다. 먼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는 독립변수 평등에 관한 인식과 주택 소유

여부로 나타났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은 독립변수 형평에 대한 인식과 통제변수 주관적 계층인식, 생활수준 만족도로 나타났다.

정치인 집단에는 연령별 구분에서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한명도 없었다. 거주지에서는 기타도시·농어촌에 거주하는 표본이 한명도 없었다. 따라서 통제변수 중 나이2(노년층)와 거주지2(기타도시·농어촌)의 조절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표 47〉 제도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정치인)

	제도평가	형평	평등	성별	중년층	학력
제도평가	1.000	.425	-.315	.131	-.148	-.047
형평		1.000	-.421	.075	-.179	-.020
평등			1.000	-.155	.267	-.053
성별				1.000	-.180	-.176
중년층					1.000	-.060
학력						1.000
주관계층						
2백~4백						
4백만원~						
수도권						
주택소유						
생활만족						

	주관계층	2백~4백 만원	4백만원 이상	수도권	주택소유	생활만족
제도평가	.223	-.117	.059	.019	-.158	.163
형평	.140	-.066	-.028	-.159	-.158	.211
평등	-.147	.114	-.170	.142	.184	-.215
성별	.117	.158	-.040	-.090	-.327	.098
중년층	-.132	.173	-.020	.071	.082	-.139
학력	.132	-.111	.123	-.038	.087	.114
주관계층	1.000	-.161	.111	-.060	-.229	.454
2백~4백		1.000	-.492	.150	-.077	.012
4백만원~			1.000	.065	-.057	.073
수도권				1.000	-.209	.015
주택소유					1.000	-.162
생활만족						1.000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회귀분석모형의 적합도 등의 모델 요약은 다음의 〈표 48〉과 같다.

〈표 48〉 제도평가의 회귀모형 요약(정치인)

변수	R	R^2	수정된 R^2	F값	유의도
제도평가	.503	.253	.123	1.943	.050

종속변수인 제도평가에 대한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다중 회귀분석결과, $R^2(adjR^2)$값은 0.253(0.123)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25.3%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평가 회귀분석 결과(정치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β값	표준오차			
(상수)	1.627	.888		1.832	.072
형평	.393	.140	.350	2.814	.007***
평등	-.125	.109	-.148	-1.155	.253
여자	.100	.147	.083	.677	.501
(남자)					
중·장년층	-.012	.155	-.009	-.075	.941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154	.312	-.056	-.493	.624
(대졸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109	.093	.150	1.173	.245
200~400만원	-.108	.149	-.099	-.728	.469
400만원 이상	-.023	.160	-.019	-.141	.888
(200만원 이하)					
수도권·광역도시	.159	.147	.129	1.081	.284
(서울)					
주택 소유	.009	.135	.008	.066	.948
(주택 무소유)					
생활수준 만족도	-.007	.073	-.012	-.098	.922

정치인 집단의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형평이 0.39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서도 모든 변수의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별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하고,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의 〈표 49〉와 같다.

〈표 49〉 매개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합

변수	전체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	
	β값	유의수준	β값	유의수준	β값	유의수준	β값	유의수준
형평원칙	.249	.000***	.266	.000***	.219	.000***	.393	.007***
평등원칙	−.038	.249	−.028	.517	−.043	.386	−.125	.253

형평에 대한 인식은 전체 조사대상자,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 모든 집단에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에 대한 인식은 전체 조사대상자, 공무원, 일반인, 정치인 모든 집단에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 5 절 요인 간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1) 인과모형의 추정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형평에 의한 분배정의와 평등에 의한 분배정의가 불공정 원인에 대한 인식 3개의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모형으로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가설적 인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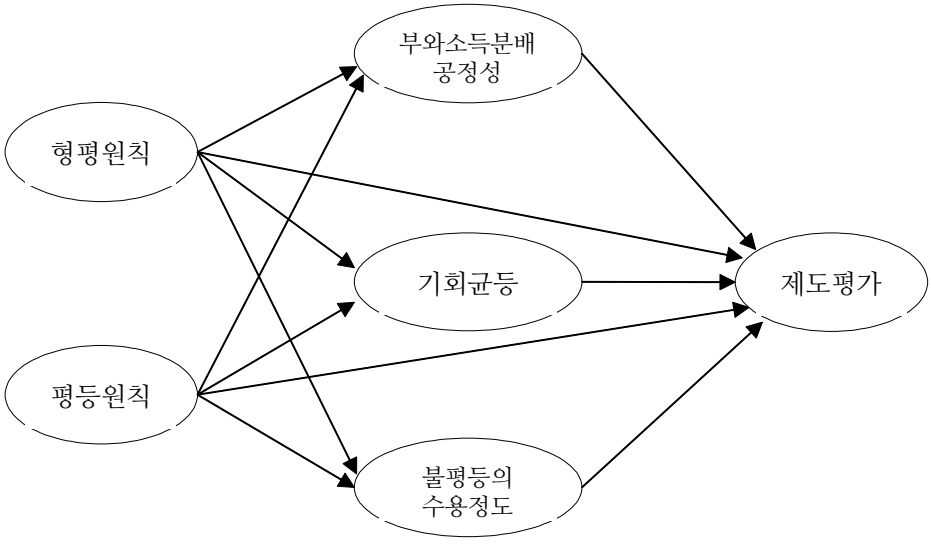

가설적 인과모형은 독립변수 형평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불공정 원인에 대한 인식 3개의 변수를 매개하여 제도평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독립변수가 직접 제도평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려하였다. 인과모형의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형평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형평은 기회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3. 형평은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평등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평등은 기회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평등은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은 제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기회균등은 제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제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4. 형평은 제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5. 평등은 제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제안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편의를 위해 변수의 고유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분석변수의 고유명 설정〉

문 항			고유명
형평원칙 (A)		소득격차당위	A1
		생활개인책임	A2
		지불비례의료	A3
		지불비례주택	A4
		연금실적비례	A5
평등원칙 (B)		최저소득보장	B1
		최저생활보장	B2
		국가의료보장	B3
		국가주거보장	B4
매개변수	불평등의 수용정도(C)	개인실패노력	C1
	기획균등 (D)	능력노력성공	D1
		제도정책성공	D2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F)	개인성공좌우	F1
		경제공정배분	F2
제도평가 (G)		조세제도공정	G1
		시회보장공정	G2
		의료보험공정	G3
		주택정책공정	G4
		국민연금공정	G5

2. 전체 조사대상자

집단 간 경로분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앞서 설정한 기초 인과모형을 기본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초모형의 분석결과(전체 조사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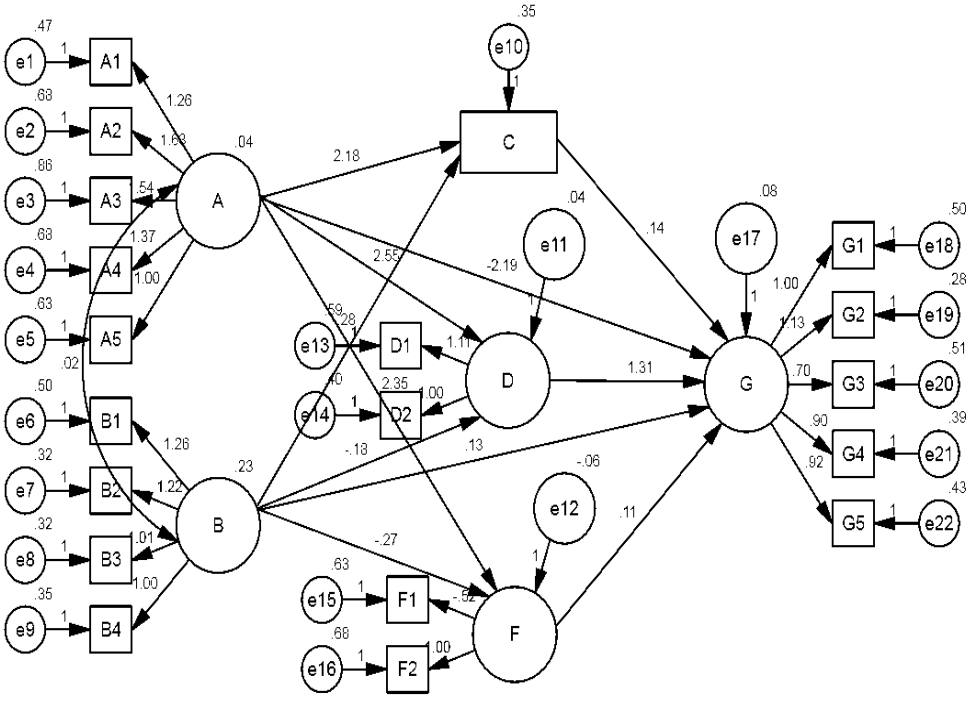

주 : e1~e22 = 오차항

〈표 50〉은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이다.

〈표 50〉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전체)

가설	인과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유의 확률	가설 검증
1-1	형평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2.179	0.609	0.352	6.192	***	채택
1-2	형평 → 기회균등	2.554	0.944	0.413	6.191	***	채택
1-3	형평 → 불평등의 수용정도	2.347	1.152	0.389	6.030	***	채택
2-1	평등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0.283	-0.182	0.070	-4.070	***	채택
2-2	평등 → 기회균등	-0.178	-0.151	0.070	-2.530	.011	채택
2-3	평등 → 불평등의 수용정도	-0.270	-0.305	0.078	-3.479	***	채택
3-1	부와소득분배공정성 → 제도평가	0.143	0.199	0.040	3.543	***	채택
3-2	기회균등 → 제도평가	1.305	1.375	0.670	1.949	.051*	채택
3-3	불평등 수용정도 → 제도평가	0.107	0.085	0.291	0.367	.714	기각
3-4	형평 → 제도평가	-2.186	-0.852	1.781	-1.228	.220	기각
3-4	평등 → 제도평가	0.126	0.113	0.150	0.845	.398	기각

분석결과, 총 11개의 가설 가운데 〈형평원칙선호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형평원칙선호 → 기회균등〉, 〈형평원칙선호 → 불평등의 수용정도〉, 〈평등원칙선호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평등원칙선호 → 기회균등〉, 〈평등원칙선호 → 불평등의 수용정도〉,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제도평가〉, 〈기회균등 → 제도평가〉 등 8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변수 간 계수 값을 살펴보면, 첫째, 형평은 모든 매개변수에 정(+)의 관계가 있었고, 대체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그 중 기회균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컸다.

둘째, 평등원칙선호는 모든 매개 변수에 부(−)의 관계가 있었고, 형평원칙선호에 비해 영향력 크기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값은 불평등의 수용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균등과 제도평가의 관계만 채택되었다. 모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각된 가설을 제거한 후, 오차항을 고려한 모형의 최적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음은 기각된 가설을 제외한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이다.

〈기각된 가설을 고려한 최종모형(전체 조사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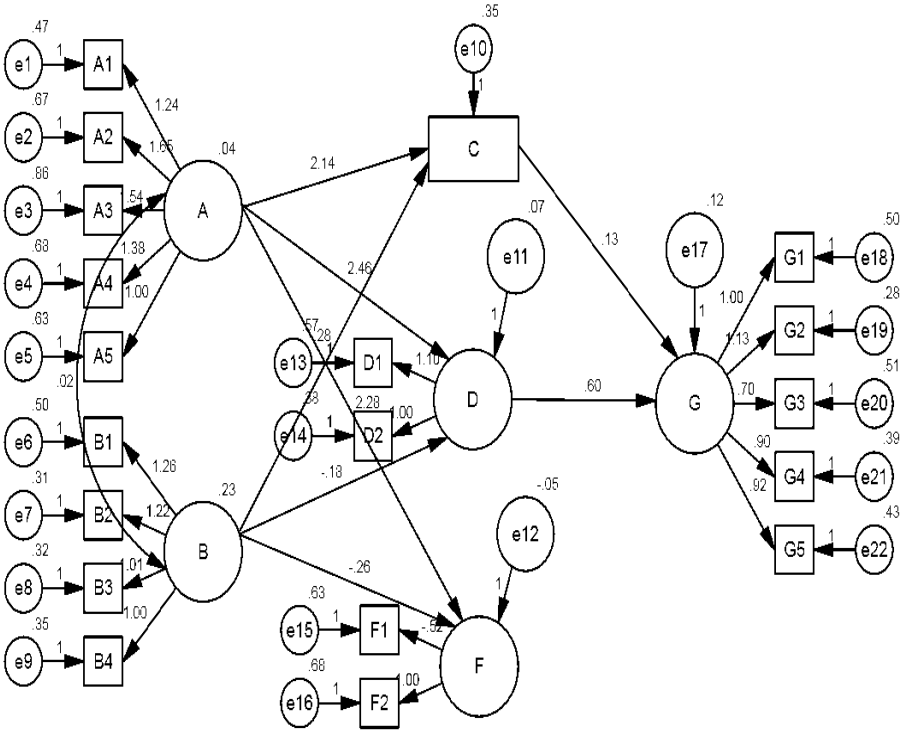

〈표 51〉 최종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전체 조사대상자)

가설	인과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유의 확률	가설 검증
1-1	형평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1.396	0.432	0.269	5.194	***	채택
1-2	형평 → 기회균등	1.815	0.684	0.325	5.589	***	채택
1-3	형평 → 불평등의 수용정도	-0.149	-0.096	0.061	-2.438	.015	채택
2-1	평등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0.028	0.022	0.061	0.456	.648	기각
2-2	평등 → 기회균등	2.135	0.665	0.371	5.752	***	채택
2-3	평등 → 불평등의 수용정도	-0.115	-0.074	0.077	-1.500	.134	기각
3-1	부와소득분배공정성 → 제도평가	0.085	0.115	0.041	2.057	.040	채택
3-2	기회균등 → 제도평가	0.665	0.744	0.073	9.083	***	채택

오차항을 고려한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기초모형에서 채택된 7개의 가설 가운데, 〈평등원칙선호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평등원칙선호 → 불평등의 수용정도〉을 제외한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평등이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이 2.13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형평이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이 1.815로 나타났으며,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1.396의 영향을 미쳤다. 한편, 형평은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 판단 (전체 조사대상자)〉

비교기준			수용 기준	최종 모형	적합 여부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x2(df)	-	365.134	-
		p-value	p>0.05	.000	부적합
		적합지수(GFI)	>0.9	.957	적합
		평균오차제곱근(RMR)	<0.05	.033	적합
		조정적합지수(AGFI)	>0.9	.935	적합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0.08	.047	적합
	증분적합지수	표준적합지수(NFI)	>0.9	.901	적합
		비교적합지수(CFI)	〉0.9	.932	적합
	간명적합지수	아카이께 정보기준(AIC)	최소값	493.134	-
		간명적합지수(PGFI)	최대값	.635	-

절대적합지수 가운데 x2(df)은 365.134로 나타났으며, p-value는 .000로 나타나 수용기준에 부적합하였다. 적합지수(GFI)는 .957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평균오차제곱근(RMR)도 .033로 수용기준 .05 이하에 적합하였다. 조정적합지수(AGFI)는 .935로 수용기준에 적합하였다.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도 .047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증분적합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와 비교적합지수(CFI)가 각각 .901과 .932으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간명적합지수에서는 아카이께 정보기준(AIC) 값이 493.134, 간명적합지수(PGFI)가 .635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판단결과 7개의 수용기준 가운데 6개가 적합하였다. 따라서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상당히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그림 3〉는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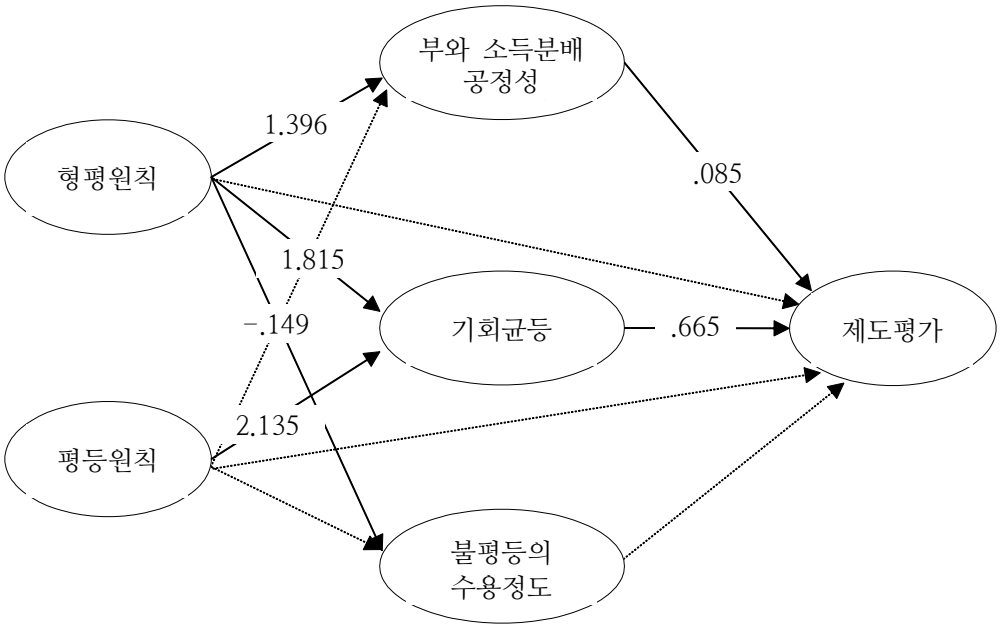

주 : 비표준화 계수를 적용함.

최종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매개로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직·간접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직·간접 효과(전체 조사대상자)〉

독립변수	매개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종속 변수	전체 효과
형평원칙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0.118	제도 평가	1.316
	→ 기회균등	−	1.206		
평등원칙	→ 기회균등		1.419		1.419

독립변수 형평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을 매개로 제도평가에 0.118의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기회균등'을 매개로 해서는 1.206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총 1.316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평등은 '기회균등만을 매개로 하여, 1.419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형평과 평등 모두 제도평가에 대한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 공무원

다음으로 앞서 설정한 기초 인과모형을 공무원에게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초모형의 분석결과(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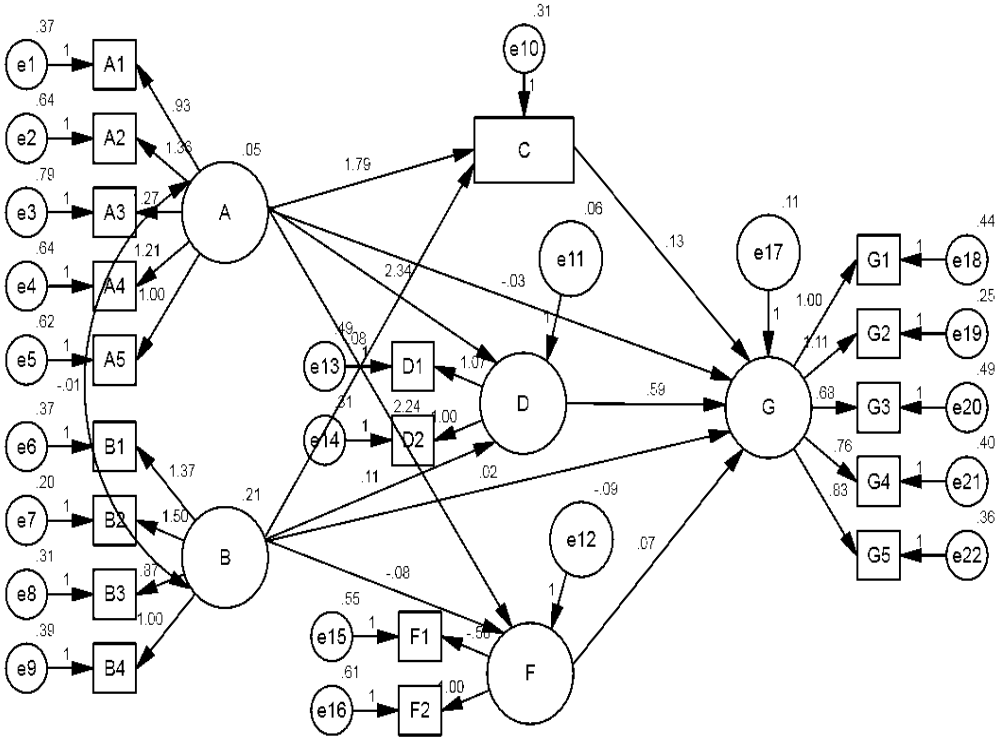

주 : e1~e22 = 오차항

다음의 〈표 52〉 는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이다.

〈표 52〉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공무원)

가설	인과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유의 확률	가설 검증
1-1	형평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1.786	0.569	0.391	4.566	***	채택
1-2	형평 → 기회균등	2.342	0.911	0.506	4.626	***	채택
1-3	형평 → 불평등의 수용정도	2.244	1.241	0.494	4.54	***	채택
2-1	평등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0.083	-0.055	0.091	-0.908	.364	기각
2-2	평등 → 기회균등	0.111	0.091	0.101	1.101	.271	기각
2-3	평등 →불평등의 수용정도	-0.08	-0.092	0.105	-0.756	.450	기각
3-1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제도평가	0.135	0.176	0.059	2.287	.022	채택
3-2	기회균등 → 제도평가	0.591	0.63	0.404	1.462	.144	기각
3-3	불평등 수용정도→ 제도평가	0.074	0.055	0.237	0.311	.756	기각
3-4	형평 → 제도평가	-0.026	-0.011	0.905	-0.029	.977	기각
3-4	평등 → 제도평가	0.024	0.021	0.085	0.279	.780	기각

분석결과, 총 11개의 가설 가운데 〈형평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형평 → 기회균등〉, 〈형평 → 불평등의 수용정도〉,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제도평가〉 등 4개의 가설만이 채택되었다.

변수 간 계수 값을 살펴보면, 첫째, 형평은 모든 매개변수에 정(+)의 관계가 있었고, 대체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그 중 기회균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는 앞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이다.

둘째, 평등은 모든 매개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수 값도 기회균등을 제외하고는 부(-)의 방향이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과 제도평가의 관계만 채택되었고,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회

균등과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각된 가설을 제거한 후, 오차항을 고려한 모형의 최적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음은 기각된 가설을 제외한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이다.

〈기각된 가설을 고려한 최종모형(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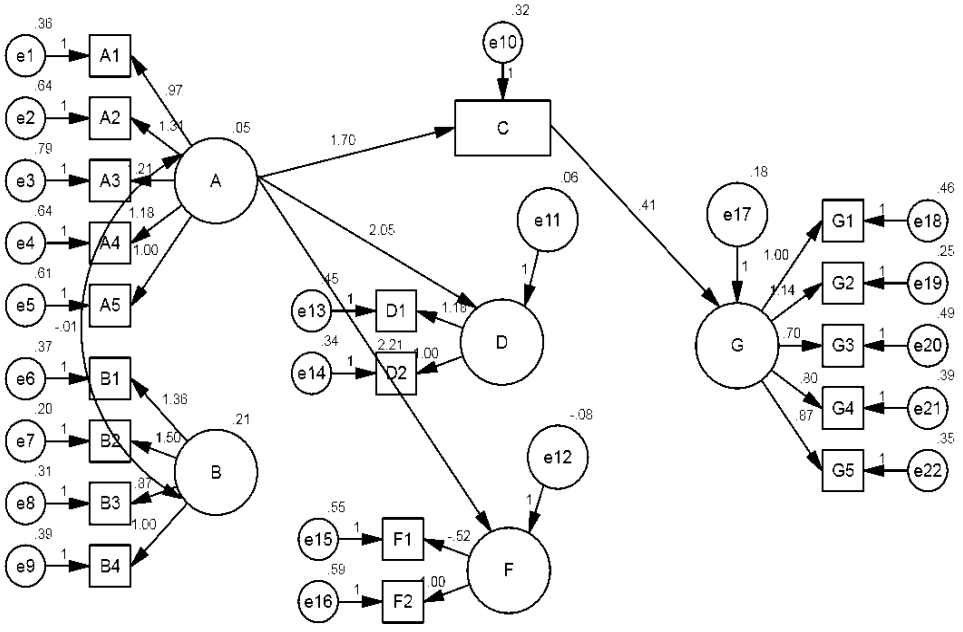

〈표 53〉 최종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공무원)

가설	인과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유의확률	가설검증
1-1	형평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1.128	0.54	0.196	5.766	***	채택
1-2	형평 → 기회균등	1.405	0.987	0.253	5.562	***	채택
1-3	형평 → 불평등의 수용정도	1.370	1.144	0.241	5.677	***	채택
3-1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제도평가	0.376	0.514	0.044	8.496	***	채택

오차항을 고려한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기초모형에서 채택된 4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형평이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이 1.4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형평이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1.370으로 나타났으며,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1.128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이 제도평가에 0.376의 영향을 미쳤다.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 판단(공무원)〉

비교기준			수용 기준	최종 모형	적합 여부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x2(df)	-	302.896	-
		p-value	p>0.05	.000	부적합
		적합지수(GFI)	>0.9	.930	적합
		평균오차제곱근(RMR)	<0.05	.047	적합
		조정적합지수(AGFI)	>0.9	.902	적합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0.08	.054	적합
	증분적합지수	표준적합지수(NFI)	>0.9	.843	부적합
		비교적합지수(CFI)	〉0.9	.904	적합
	간명적합지수	아카이께 정보기준(AIC)	최소값	412.896	-
		간명적합지수(PGFI)	최대값	.661	-

절대적합지수 가운데 x2(df)은 302.896으로 나타났으며, p-value는 .000로 나타나 수용기준에 부적합하였다. 적합지수(GFI)는 .930으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평균오차제곱근(RMR)도 .047로 수용기준 .05 이하에 적합하였다. 조정적합지수(AGFI)는 .902로 수용기준에 적합하였다.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도 .054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증분적합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는 .843으로 수용기준에 부적합 하였고, 비교적합지수(CFI)는 .904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간명적합지수에서는

아카이께 정보기준(AIC) 값이 402.896, 간명적합지수(PGFI)가 .661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판단결과 7개의 수용기준 가운데 5개가 적합하였다. 따라서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상당히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그림 4-7〉 은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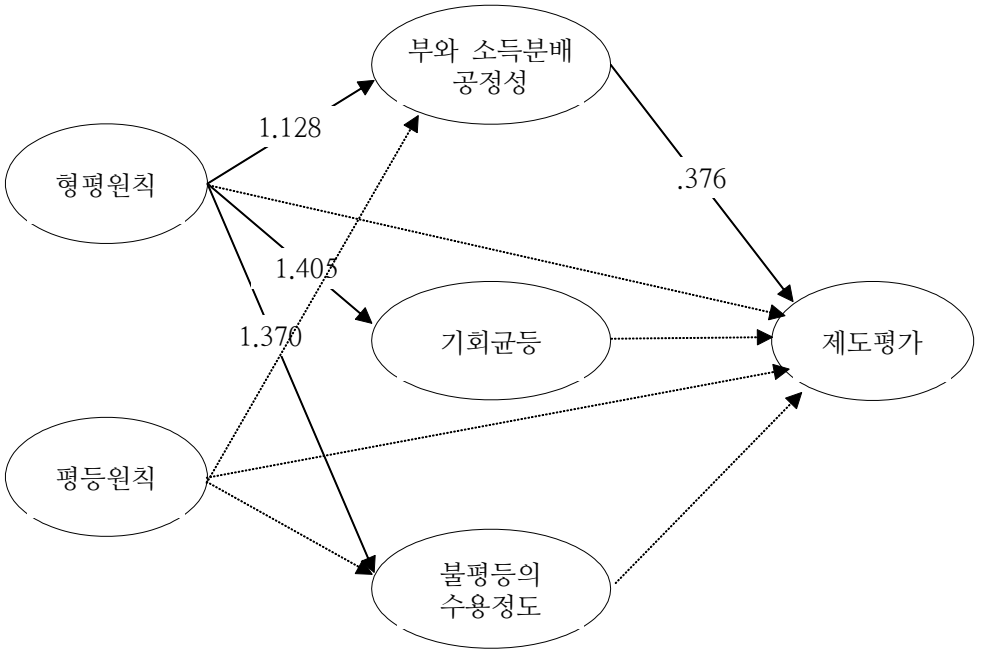

최종모형에서 독립변수 형평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을 매개로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직·간접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직·간접 효과(공무원)〉

독립변수	매개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종속 변수	전체 효과
형평원칙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0.424	제도 평가	0.424

독립변수 형평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을 매개로 제도평가에 0.424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회균등과 불평등의 합법화 수용정도는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형평과 평등 모두 제도평가에 대한 직접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4. 일반인

마지막으로 앞서 설정한 기초 인과모형을 기본으로 일반인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초모형의 분석결과(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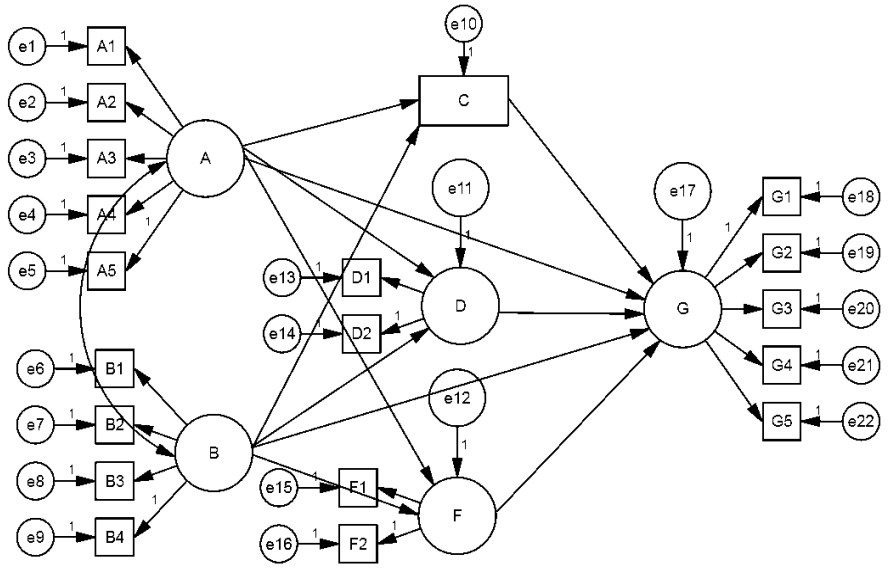

주 : e1~e22 = 오차항

〈표 54〉은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이다.

분석결과, 총 11개의 가설 가운데 〈형평원칙선호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형평원칙선호 → 기회균등〉, 〈형평원칙선호 → 불평등의 수용정도〉, 〈평등원칙선호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평등원칙선호 → 기회균등〉, 〈평등원칙선호 → 불평등의 수용정도〉,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제도평가〉 등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54〉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일반인)

가설	인과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유의 확률	가설 검증
1-1	형평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2.440	0.748	0.482	5.062	***	채택
1-2	형평 → 기회균등	2.693	1.158	0.538	5.005	***	채택
1-3	형평 → 불평등의 수용정도	2.256	1.171	0.475	4.753	***	채택
2-1	평등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0.785	-0.442	0.151	-5.196	***	채택
2-2	평등 → 기회균등	-0.759	-0.6	0.155	-4.901	***	채택
2-3	평등 → 불평등의 수용정도	-0.640	-0.611	0.157	-4.069	***	채택
3-1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제도평가	0.155	0.23	0.06	2.58	0.01	채택
3-2	기회균등 → 제도평가	8.755	9.26	41.75	0.21	0.834	기각
3-3	불평등의 수용정도 → 제도평가	-10.21	-8.944	2568	0	1	기각
3-4	형평 → 제도평가	0.643	0.292	5796	0	1	기각
3-4	평등 → 제도평가	-0.310	-0.259	1644	0	1	기각

변수 간 계수 값을 살펴보면, 첫째, 형평은 모든 매개변수에 정(+)의 관계가 있었고, 대체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그 중 기회균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컸다.

둘째, 평등원칙선호는 모든 매개 변수에 부(-)의 관계가 있었고, 형평원칙 선호에 비해 영향력 크기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값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과 제도평가의 관계만 채택되었고,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회균등과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각된 가설을 제거한 후, 오차항을 고려한 모형의 최적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음은 기각된 가설을 제외한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이다.

〈기각된 가설을 고려한 최종모형(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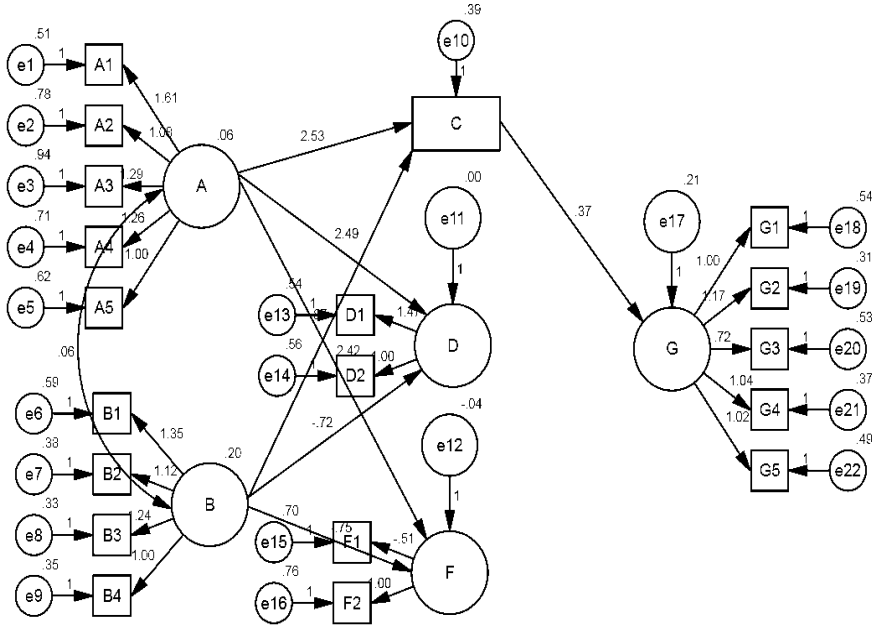

주 : e1~e22 = 오차항

오차항을 고려한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기초모형에서 채택된 7개의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평등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4.638로 가장 높았다.

〈표 55〉 최종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일반인)

가설	인과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유의 확률	가설 검증
1-1	형평 → 부와소득분배공정성	4.616	1.146	1.163	3.971	***	채택
1-2	형평 → 기회균등	-1.548	-0.933	0.305	-5.08	***	채택
1-3	형평 → 불평등의 수용정도	3.717	1.494	0.944	3.939	***	채택
2-1	평등 → 부와소득분배공정성	4.638	1.663	1.197	3.875	***	채택
2-2	평등 → 기회균등	-1.108	-1.081	0.24	-4.616	***	채택
2-3	평등 → 불평등의 수용정도	-1.432	-1.245	0.32	-4.473	***	채택
3-1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제도평가	0.756	1.133	0.127	5.945	***	채택

다음으로 형평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4.616으로 나타났으며,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3.717의 영향을 미쳤다. 형평은 기회균등에 -1.548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 판단(일반인)〉

비교기준			수용 기준	최종 모형	적합 여부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x2(df)	-	262.792	-
		p-value	p>0.05	.000	부적합
		적합지수(GFI)	>0.9	.940	적합
		평균오차제곱근(RMR)	<0.05	.046	적합
		조정적합지수(AGFI)	>0.9	.913	적합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0.08	.048	적합
	증분적합지수	표준적합지수(NFI)	>0.9	.829	부적합
		비교적합지수(CFI)	〉0.9	.928	적합
	간명적합지수	아카이께 정보기준(AIC)	최소값	380.792	-
		간명적합지수(PGFI)	최대값	.648	-

절대적합지수 가운데 x2(df)은 262.792로 나타났으며, p-value는 .000로 나타나 수용기준에 부적합하였다. 적합지수(GFI)는 .940으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평균오차제곱근(RMR)도 .046으로 수용기준 .05 이하에 적합하였다. 조정적합지수(AGFI)는 .913으로 수용기준에 적합하였다.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도 .048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증분적합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는 .829로 부적합하였고, 비교적합지수(CFI)는 .928으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간명적합지수에서는 아카이께 정보기준(AIC) 값이 380.792, 간명적합지수(PGFI)가 .648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판단결과 7개의 수용기준 가운데 5개가 적합하였다. 따라서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상당히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그림 5〉는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5〉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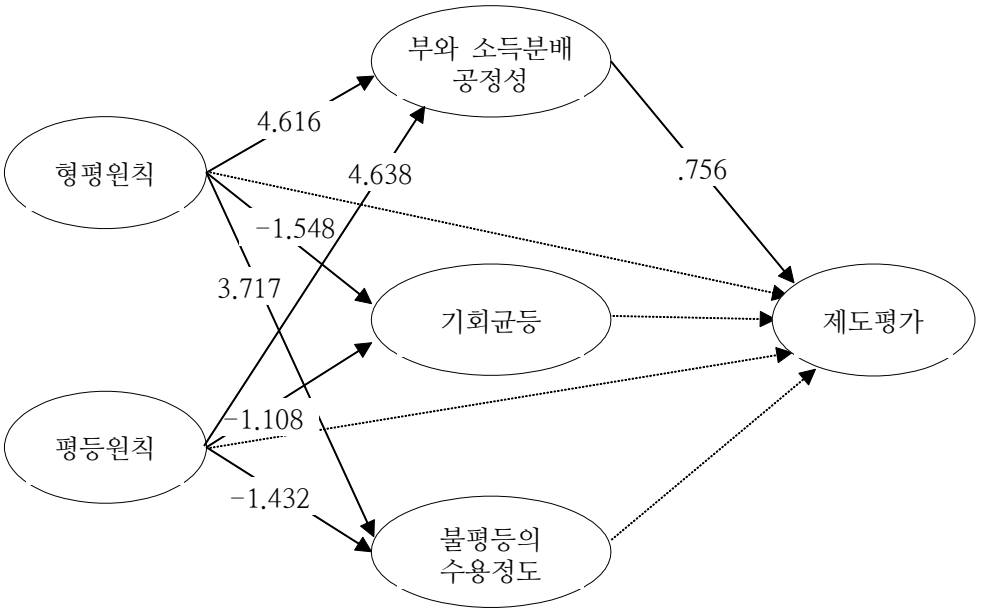

최종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을 매개로 종속변수 제도평가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직·간접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직·간접 효과(일반인)〉

독립변수	매개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종속 변수	전체 효과
형평원칙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3.489	제도 평가	3.489
평등원칙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3.506		3.506

독립변수 형평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을 매개로 제도평가에 3.489의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평등은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을 매개로 하여, 3.506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형평과 평등 모두 제도평가에 대한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정치인

다음으로 앞서 설정한 기초 인과모형을 정치인에게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초모형의 분석결과(정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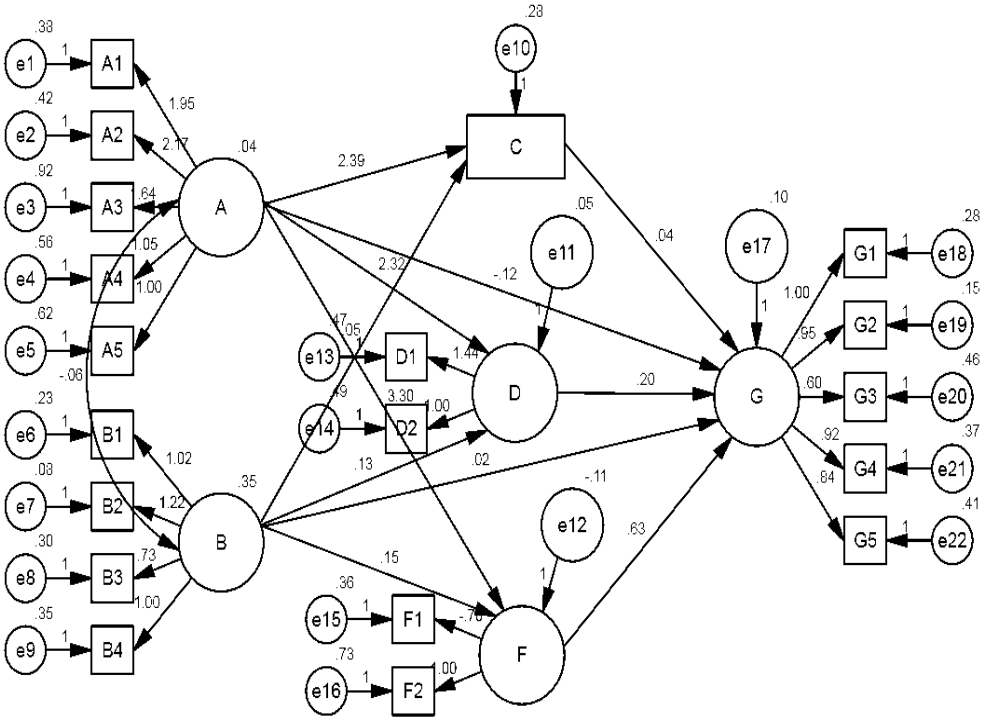

주 : e1~e22 = 오차항

다음의 〈표 56〉 는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이다.

〈표 56〉 기초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정치인)

가설	인과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유의 확률	가설 검증
1-1	형평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2.391	0.668	1.261	1.895	.058*	채택
1-2	형평 → 기회균등	2.318	0.943	1.272	1.823	.068*	채택
1-3	형평 → 불평등의 수용정도	3.301	1.294	1.761	1.875	.061*	채택
2-1	평등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0.05	0.043	0.167	0.297	.767	기각
2-2	평등 → 기회균등	0.125	0.157	0.155	0.806	.420	기각
2-3	평등 → 불평등의 수용정도	0.152	0.183	0.198	0.765	.444	기각
3-1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 제도평가	0.042	0.056	0.138	0.304	.761	기각
3-2	기회균등 → 제도평가	0.196	0.181	0.653	0.300	.764	기각
3-3	불평등의 수용정도 → 제도평가	0.632	0.604	0.583	1.083	.279	기각
3-4	형평 → 제도평가	−0.122	−0.046	2.084	−0.058	.953	기각
3-4	평등 → 제도평가	0.019	0.022	0.177	0.107	.915	기각

분석결과, 총 11개의 가설 가운데 〈형평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형평 → 기회균등〉, 〈형평 → 불평등의 수용정도〉 등 3개의 가설만이 채택되었다. 변수 간 계수 값을 살펴보면, 첫째, 형평은 모든 매개변수에 정(+)의 관계가 있었고, 대체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그 중 불평등의 수용정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기각된 가설을 제거한 후, 오차항을 고려한 모형의 최적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음은 기각된 가설을 제외한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이다.

〈기각된 가설을 고려한 최종모형(정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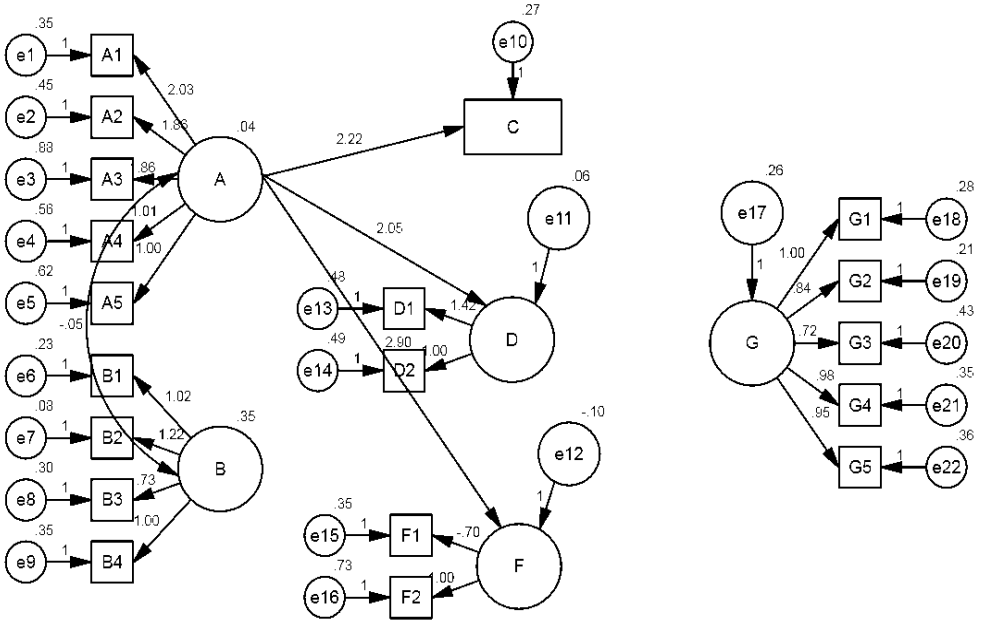

〈표 57〉 최종모형의 분석변수 간 경로계수(정치인)

가설	인과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유의 확률	가설 검증
1-1	형평 →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2.221	0.650	1.142	1.946	.052 *	채택
1-2	형평 → 기회균등	2.045	0.864	1.111	1.841	.066 *	채택
1-3	형평 → 불평등의 수용정도	2.904	1.196	1.521	1.909	.056 *	채택

오차항을 고려한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기초모형에서 채택된 3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형평이 불평등의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2.90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형평이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에 미치

는 영향이 2.221로 나타났으며, 기회균등에 2.04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기각되었다.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 판단(정치인)〉

비교기준			수용 기준	최종 모형	적합 여부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x2(df)	-	253.286	-
		p-value	p>0.05	.000	부적합
		적합지수(GFI)	>0.9	.972	적합
		평균오차제곱근(RMR)	<0.05	.050	적합
		조정적합지수(AGFI)	>0.9	.874	부적합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0.08	.041	적합
	증분적합지수	표준적합지수(NFI)	>0.9	.909	적합
		비교적합지수(CFI)	〉0.9	.971	적합
	간명적합지수	아카이께 정보기준(AIC)	최소값	335.286	-
		간명적합지수(PGFI)	최대값	.607	-

절대적합지수 가운데 x2(df)은 253.286으로 나타났으며, p-value는 .000로 나타나 수용기준에 부적합하였다. 적합지수(GFI)는 .972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평균오차제곱근(RMR)도 .050로 수용기준 .05 이하에 적합하였다. 조정적합지수(AGFI)는 .874로 수용기준에 부적합하였다.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은 .041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증분적합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는 .909로 수용기준에 적합 하였고, 비교적합지수(CFI)는 .971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간명적합지수에서는 아

카이께 정보기준(AIC) 값이 335.286, 간명적합지수(PGFI)가 .607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판단결과 7개의 수용기준 가운데 5개가 적합하였다. 따라서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상당히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그림 6〉는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6〉 최종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정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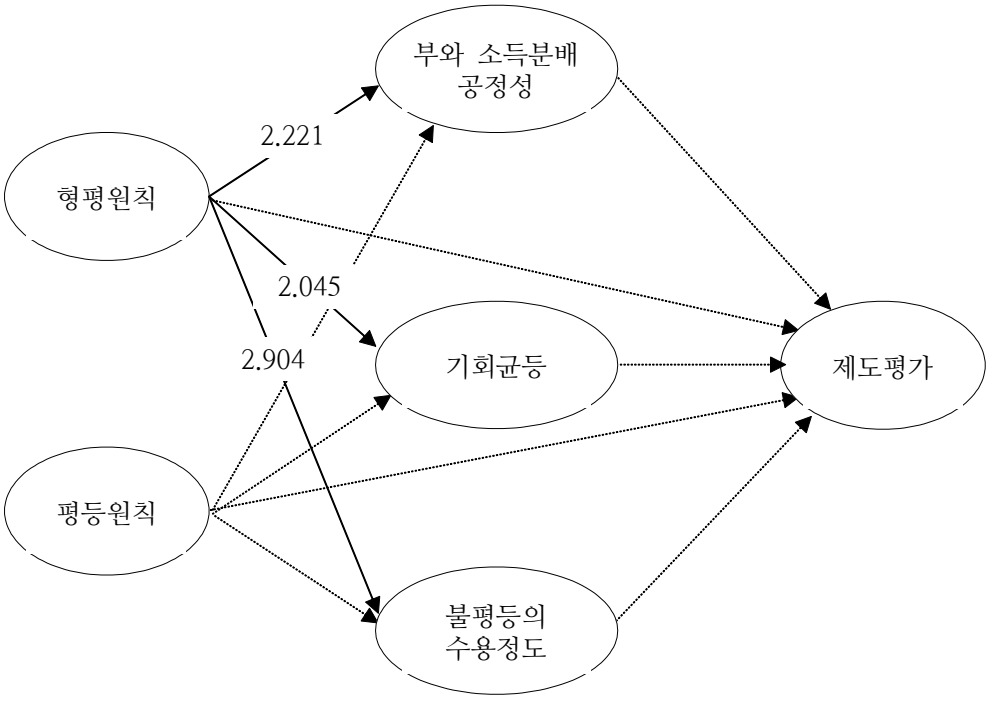

정치인의 최종모형에서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매개변수와 독립변수의 직·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정책들을 분배제도로 간주하고 각 정책들은 다양한 분배정의 원칙을 통하여 사회의 자원을 분배한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분배원칙들이 정치철학적 분배정의론에서 어떻게 주장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분배정의 원칙의 개념을 규명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다양한 분배원칙들이 일반인들과 공무원,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며, 분배제도 공정성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평등 및 형평의 분배원칙 선호가 불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 분배제도의 공정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정치철학적 분배정의론을 고찰하는 부분에서 우선 노직과 하이에크 등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정의론은 시장적 분배를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최소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즉 정부에 의한 재분배를 반대하며 최소국가론 주장하였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함으로서 평등원칙을 강조했으나 그것은 최대 효용을 위한 수단일 뿐으로 분배문제에 대해서는 초점을 벗어난 이론으로 규정되었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제 1원칙의 자유우선성을 통하여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제 2원칙의 정당한 불평등에서 최소수혜자 집단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분배해야하며 기회균등을 주장함으로서 평등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개인들의 자유는 상호의존적인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공동선을 강조함으로서 공생, 공익 등 공동체의 유지·강화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센델과 왈저의 공동체주의 정의론을 고찰하였다.

맑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가 철폐되고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욕구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평등원칙을 주장하였다.

재분배 장치로서의 북지국가의 여러 정책들에 관련된 분배정의론을 고찰하면서 분배정의 원칙으로 평등원칙, 형평원칙, 욕구원칙의 세가지 분배원칙을 도출하였다. 형평원칙은 노직과 하이에크 등의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며, 평등원칙은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및 공동체주의, 맑스주의와 관련된다.

욕구원칙의 경우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과 롤즈의 자유주의적평등주의, 센델의 공동체주의 정의론, 맑스주의 모두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칙이지만 본 연구에서 사전조사시 욕구원칙과 평등원칙의 선호에 대한 요소가 분리되지 않음에 욕구원칙선호는 제외하였다. 이로서 욕구원칙과 평등원칙의 차이가 아직까지 사회구성원들에게 정확히 인식이 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평원칙의 경우 기존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분배관행에 따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인 의미를 가지며, 평등원칙의 경우 국가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으며 평등과 형평의 두 분배원칙을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조작화하고 이를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 일반인과 공무원, 정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집단별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불공정성 인식의 경우 일반인, 공무원, 정치인 모두'부와 소득분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은 전체대상자 모두 3점 이하의 부정정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불평등의 수용정도는 3점 이상의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이는 현재 분배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용정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오히려 200만원 이상 소득자보다 불공성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평등분배에 관한 인식에서 세 집단 모두 교육기회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소득과 재산 부문을 가자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불공정성 인식에서 경제성장의 공정배분 부문에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것과 맥을 같이 하였다.

분배원칙선호는 평등원칙의 선호도의 경우 정치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분배제도의 경우 의료보험제도의 적용에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두 번째로 사회보장정책을 셋째로

주택정책 부문의 적용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평등원칙을 선호하였다.

형평원칙의 선호도의 경우 공무원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인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분배제도의 경우 조세정책의 적용에 가장 선호를 보였으며 두 번째로 주택정책, 셋째로 국민연금제도에의 적용이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형평원칙을 선호하였다. 이렇듯 형평원칙과 평등원칙의 선호에서 집단별, 분배제도별, 소득차이별 분배정의에 대하여 다른 선호를 보였다.

제도의 공정성 평가의 경우 평등원칙의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의료보험제도를 가장 공정한 제도로 평가하였다. 둘째로 사회보장정책, 셋째로 국민연금제도, 넷째로 주택정책, 그리고 형평원칙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조세정책을 가장 공정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집단이 제도공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일반인 집단은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분배원칙 선호가 불공정성 인식을 매개로한 제도 평가의 경우 형평원칙 선호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등원칙 선호의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1) 정책적 시사점

우선 분배제도 중 조세정책은 형평의 원칙을 선호하나 현 제도의 평가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 조세정책의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을 지나면서 간접세 비중이 50%를 상회하면서 OECD 평균 61%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는데 이렇듯 간접세 위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07년 기준 GDP대비 OECD평균이 9.1%이고 2008년 기준 한국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세수증대는 개인소득세의 점차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각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을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평등의 원칙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 제도의 공정성평가는 5개 정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본 연구 결과를 접목해보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서비스 차등화 등 의료보험제도에 형평의 원칙이 투영됨에 따라 제도공정성 평가에서 지금 같은 높은 인식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주택정책은 형평의 원칙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 제도의 공정성 평가는 조세정책 다음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정책의 미미한 대응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을 보면 가계부채의 상당부문이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및 전세대출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주택마련 약자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보장제도 및 국민연금 정책의 경우 하위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상위 분위에서 부의 영향으로 재분배 기능이 있으므로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정규직 종사사자에 대한 가입율을 극대화 시키고 최저수준의 급여를 적절히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정책의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가 넓고 전달체계의 비효율로 인한 중복서비스가 발생하거나 아예 서비스의 부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을 좁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선정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급여수준의 향상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회귀분석에서 본 것처럼 평등원칙의 가설들이 대부분 기각되었고 매개변수의 역할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직은 복지의식이 그리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등원칙이 시장적 분배를 수정할 수 있는 원칙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층에 속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평등원칙을 조금 더 선호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정책을 통해 분배를 수정하는 데 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향후 연구 과제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분배정의 및 분배제도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희박하다. 본 연구에는 분배원칙으로 형평과 평등을 다루었으나 차후 다양한 분배원칙에 대한 실증적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분배원칙과 분배제도에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공무원, 정치인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대상 특성상 노년층과 고졸이하의 학력자의 포함은 미미하였다. 차후 인구 통계 분포에 따른 대상자 선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고세훈. (2000).『복지국가의 이해: 이론과 사례』. 고려대학교출판부.

김기덕. (2002).『사회복지윤리학』. 서울: 나남출판사.

김기덕, 손병돈. (1996).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사회복지연구회』, 7(1), 123-168.

김도균. (2013).『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제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찬섭. (1998).『복지국가에 있어서의 분배정의: 정치철학적 정의론과 일반인들의 분배정의 인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 복지정치의 딜레마: 낮은 조세능력과 자가복지(自家福祉)로 인한 한계에 중점을 두어.『사회복지연구』, 38, 181-201.

박상수. (2003). 사회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法과 政策』, 9, 181-201.

박세경. (2005).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보건복지포럼』, 100, 26-38.

박세영. (1998). 형평이론에서 투입과 성과요인의 가중치와 분배원칙 선호.『한국심리학회』, 11(1), 155-177.

박순우. (2004). T. H. Marshall 시민권론의 재해석.『사회복지정책』, 20, 87-107.

박호성. (2002).『평등론』. 서울: 창작과 비평사.

박홍식. (1985). 분배원리에 관한 서설적 연구: Rawls의 정의론을 중심으로.『산경논총』, 3, 201-218.

신청호. (2007).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동서경제연구』, 19(1), 165-195.

오윤수. (2010). 『분배정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8).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16(1), 346-387.

이성우. (1983). 『복지국가의 이념과 복지정책의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 서울: 조명문화사.

이재율. (1990). 공적주의 분배적 정의론. 『 사회과학논총』, 9, 121-136.

(1995). 『경제윤리』. 서울: 민음사.

이정우. (2006).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사회의식 비교 연구: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종수. (2013).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서울: 대영문화사.

이준구. (2000).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이혜경 외. (1997). 『배분정의와 사회복지 1차년도 보고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전성표. (2006). 배분적정의, 과정적 정의 및 인간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 『한국사회학』, 40(6). 92-127.

(2006). 공공부문과 분배적 정의: 복지서비스 분배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공평성 인식, 『한세정책』. 6(1).

정용덕. (1984). 배분적 정의와 복지정책. 『사회과학』, 22(1), 274-308.

조경엽, 유진성. (2013). 『무상복지의 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지은구. (2005). 『한국사회복지 경제학 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최근희. (1993).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분배의 정의에 대한 고찰: 평등주의, 자유주의, 사회진화론자의 주장의 비교. 『법률행정논집』, 1, 257-273.

최장집 외. (2005).『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서울: 후마니타스.

한종수. (2013). 한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분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평화학 연구』, 14(3), 255-284.

허남결. (1996). 공리주의와 정의의 문제: J. S. 밀의 정의론.『윤리연구』, 35(1), 267-290.

황경식. (1986). 분배적 정의의 기준: 정의로운 결과와 공정한 절차.『철학연구』. 42, 17-46.

2. 국외문헌

d'Holbach, Paul Henri Dietrich. (1776). *La Morale universelle, ou les Devoirs de 1' homme fondes sur la nature, Theorie de la morale,* Ⅱ, Amsterdam: Rey.

Frankna, W. (1961).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in Richard Brandt ed. *Social Justi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Gilbert, Neil, Specht, Harry; and Terrell, Paul. (1993).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Hayek. Friedrich A.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chschild, Jennifer L. (1981). *What's fair?-American Beliefs about Distributive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ospers, J. (1994). 도덕행위론 : 현대 윤리학의 문제들 (최용철 역). 서울: 지성의 샘.

Kukathas, Chadran, and Pettit, Philip. (1990). *Rawls: A Theory of justice and its Critic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Kymlicka, Will. (1990).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cPherson, C. B. (1987).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Justice. In

MacPherson. C. B.(ed).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Justice and Oher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Marshall, T. H. (1963a).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rx, K. (1875).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Http://www.marxists.org/

Miller, David L. (1976). *Social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uller, W. (1993). 'Social structure,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social inequality and party preference', Dagmar Krebs and Peter Schmidt (eds.), *New Directions in Attitude Measure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Nozick, Robert.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Perelman, Charles. (1963). *The Idea of Justice and the Problem of Argument,* (trn.) John Petri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lant. Raymond. (1991). *Modern Political Thought*, Oxford: Blackwell.

Rawls, Jhon. (1958). Justice as Fairnes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I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Rescher, N. (1966). *Distributive justice A constructive critique of the utilitarian theory of distribution.* Indianapolis: Bobbs-Merril.

Sandel, M. J, (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Vlastos, Gregory. (1962). Justice and Equality, in R. B. Brandt (ed.). *Social Justice*, N, J. : Englewood Cliffs.

Walzer, Michael.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Oxford. Blackwell.

Wolff, Jonathan. (1991). *Robert Nozick: Property, Justice and the Minimum Stat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분배정의 선호와 분배제도의 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분배정의의 선호와 분배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응답 하나 하나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옳고 그른 답은 없으므로 평소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따라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10.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지도교수 : 이 성 우
연구자 : 박사과정 천 민 경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 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한다.

Ⅰ.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구분	NO	질문내용
불공정 원인에 대한 인식	1	경제성장으로 얻어진 부와 소득은 공정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2	능력과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3	개인의 성공은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에 의하여 좌우된다.
	4	개인의 실패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각종 제도와 정부정책 등은 개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Ⅱ.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평등 또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NO	질문내용	매우 불평등	약간 불평등	보통	약간 평등	매우 평등
평등분배에 관한 인식	6	법의 집행	1	2	3	4	5
	7	소득과 재산	1	2	3	4	5
	8	교육기회	1	2	3	4	5
	9	취업기회	1	2	3	4	5
	10	남녀간	1	2	3	4	5
	11	지역간	1	2	3	4	5

Ⅲ. 다음은 우리사회의 분배와 관련한 설문입니다.(5점 척도)

구분	NO	질문내용
소득격차 (조세정책)	12	국가는 모든 사람이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소득을 평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13	노력과 능력에 따른 개인별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
	14	국가는 장애인, 노인, 난치성 환자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적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15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격차를 줄이도록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 정책	16	국가는 모든 사람이 최저 생활을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7	질병, 실업, 재해, 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개인저축이나 개인보험 등으로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18	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립할 수 없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19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공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의료보험 정책	20	국가는 모든 사람이 최저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1	지불능력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22	국가는 개인들의 다양한 기본적 의료욕구를 고려하여 의료보장을 하여야 한다.
	23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구분	NO	질문내용
주택정책	24	국가는 모든 사람이 최저한의 주거권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개인들이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주택을 자유롭게 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26	국가는 국민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보장하여야 한다.
	27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공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복지혜택확대	28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한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29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30	복지정책은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1	더 나은 복지정책의 실시를 위해 세금을 인상한다면 어떤 방식에 찬성하시겠습니까? ① 모두 똑같이 더 내는 방식 ②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방식 ③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더 내는 방식 ④ 기타 (
국민연금제도	32	국가는 보험료 납부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최저한의 연금을 평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33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지불한 납부실적에 비례해서 받아야 한다.
	34	국가는 노인들의 다양한 생활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차등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5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공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Ⅳ. 다음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관련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 √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NO	질문내용	선 택	
복지 정책 지지 의견	36	선택적 무상급식정책		**선택적** 특정 계층 즉,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 **전면적, 보편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
		전면적 무상급식정책		
	37	선택적 무상보육정책		
		전면적 무상보육정책		
	38	선택적 복지제도		
		보편적 복지제도		

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39.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40.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수도권 (서울제외) ③ 광역도시 (서울제외)
④ 기타 도시 ⑤ 농어촌 (군 이하지역)

4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4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자영업자 ④ 전업 주부 ⑤ 무직 ⑥ 기타

42-1 귀하의 직장에서 직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사장, 고용주 또는 자영업주

② 상급관리자 (국장, 부장, 차장)

③ 중급관리자 (계장, 대리, 실장, 현장 감독 등)

④ 하급관리자 (주임, 조장, 반장 부사관 등)

⑤ 일반공무원, 일반노동자 등

⑥ 기타

43 귀하의 한달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_____ 만원

43-1. 귀 가정의 한 달 총 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_____ 만원

43-2. 식구들 가운데 주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 ④ 모 ⑤ 자녀 ⑥ 조부모 ⑦ 기타( )

43-3. 귀 가정의 총소득은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평균 정도 ④ 약간 낮다 ⑤ 매우 낮다

44.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명

44-1. 식구들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취학 전 아동___명 ② 초·중·고학생 __명 ③ 대학생 __명

④ 노인 (65세 이상)__명 ⑤ 장애인__명 ⑥ 해당 없음 ___

45.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동거 ⑥ 기타 ( )

46.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자택 ② 전세 ③ 월세 ④ 전· 월세이지만 다른 곳에 집이 있다.

⑤ 기타 (　　)

47 귀하의 최종 학력은 (중퇴는 졸업으로 인정)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졸　⑦ 대학원 이상

48.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개신교/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 종교
⑤ 기타 (　　)

49.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귀하 가구의 생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간층　④ 중하층　⑤ 하층

50. 귀하가 이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게 된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소득　② 직업　③ 교육　④ 출신가정　⑤ 소비생활　⑥ 재산

51. 귀하는 귀 가정의 현 생활수준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그저그렇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ABSTRACT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Evaluation of Distributive System in Korea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unfairness as an intermediate effect-

Chun, Min-Kyeung
Major in Policy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s distributive principles including social security principle, housing policy, tax policy, medical insurance policy, and national pension policy.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distributive principles in welfare state, this thesis categorizes the above-mentioned policies as two form the viewpoint of how these are applicable: equality principle and equity principle. This thesis also aims at the evaluation as to how the two principles have effect on the existing distributive system.

The two principles are derived from the viewpoint of the adaptability (adoptability) in welfare state, reflecting on politico-philosophical theories on the distributive justice.

Libertarian distributive principle is basically against distributive

principle and emphasizes equity principle. Because it focuses on equality principle which helps achieve the maximization of utility, utilitarian distributive principl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existing distributive principle in welfare state. John Rawls based on Liberal Egalitarianism in his book of *A Theory of Justice* tries to find equilibrium between equality principle and equity one both through the priority of liberty as the first principle and through permissible inequalities. Communitarians do not think that there is the distributive principle applied to the whole society or its whole members, but assume that there are various distributive principle according to distributive objects, so-called complex equality principle. Accordingly this thesis regards the preference of equality principle and the preference of equity principle as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recognition of unfairness as intermediate variable. Based on this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this thesis establishes a hypothesis as to how the independent variable has effect on the evaluation of distributive system.

When the result is summarized, the preference degree of the equity principle is highest in tax policy, while it is lowest in social security policy. The preference degree of the equality principle is highest in medical insurance policy, while it is lowest in national pension policy.

Categorically speaking, this research shows civil servant group prefers equity principle, while politician group prefers equality principle.

As for the recognition of unfairness, the general public recognize their society as highly unfair, especially wealth 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from economic growth since 1960s is most unfair. Categorically civil servant group recognizes wealth 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as highly unfair in Korean society, while the general public do not think so highly unfair as civil servant group do.

From the viewpoint of fairness evaluation in distributive system,

medical insurance system in which the equality principle is preferred is regarded as fair. On the contrary, tax policy in which the equity principle is preferred is regarded as highly unfair. Categorically civil servant group evaluates fairness degree in Korean distributive system as lowest, while the general public evaluate it as highest. This research notices that civil servant group who implements policy recognize fairness degree as lower rather than the general public or politician group do.

As for intermediate effect on fairness evaluation of distributive system and on the preference of distributive principle about unfairness recognition, intermediate effect is seen in wealth 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equal opportun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preference of equity principle, while the intermediate effect is seen only in equal opportun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preference of equality principle. Categorically speaking, in case of civil servant group, the intermediate effect is seen in fairness of wealth 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preference of equity principle, while it is seen in fairness of wealth 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viewpoint both of the preference of equality principle and of the preference of equity principle in case of general public group. However, it is not seen in case of politician group.

This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t distributive principles according to distributive system, and that if respondent groups are different, the result about the preference of principles is also different. The reason that the intermediate effect on the recognition of unfairness is unclear derives from the fact that there is no heated debate on the recognition of unfairness, that is, on the consciousness of welfare in Korea.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ough high-educated and young people tend to prefer equality principle which enables distributive

principle in market to be remedied, such a preference of distributive principle is not so powerful as to rectify distributive system because their consciousness and their power base is not so much mature.

【keywords】preference of distributive justice, evaluation of distributive policy, distributive principle, recognition of unfairness, acceptability of unfairness